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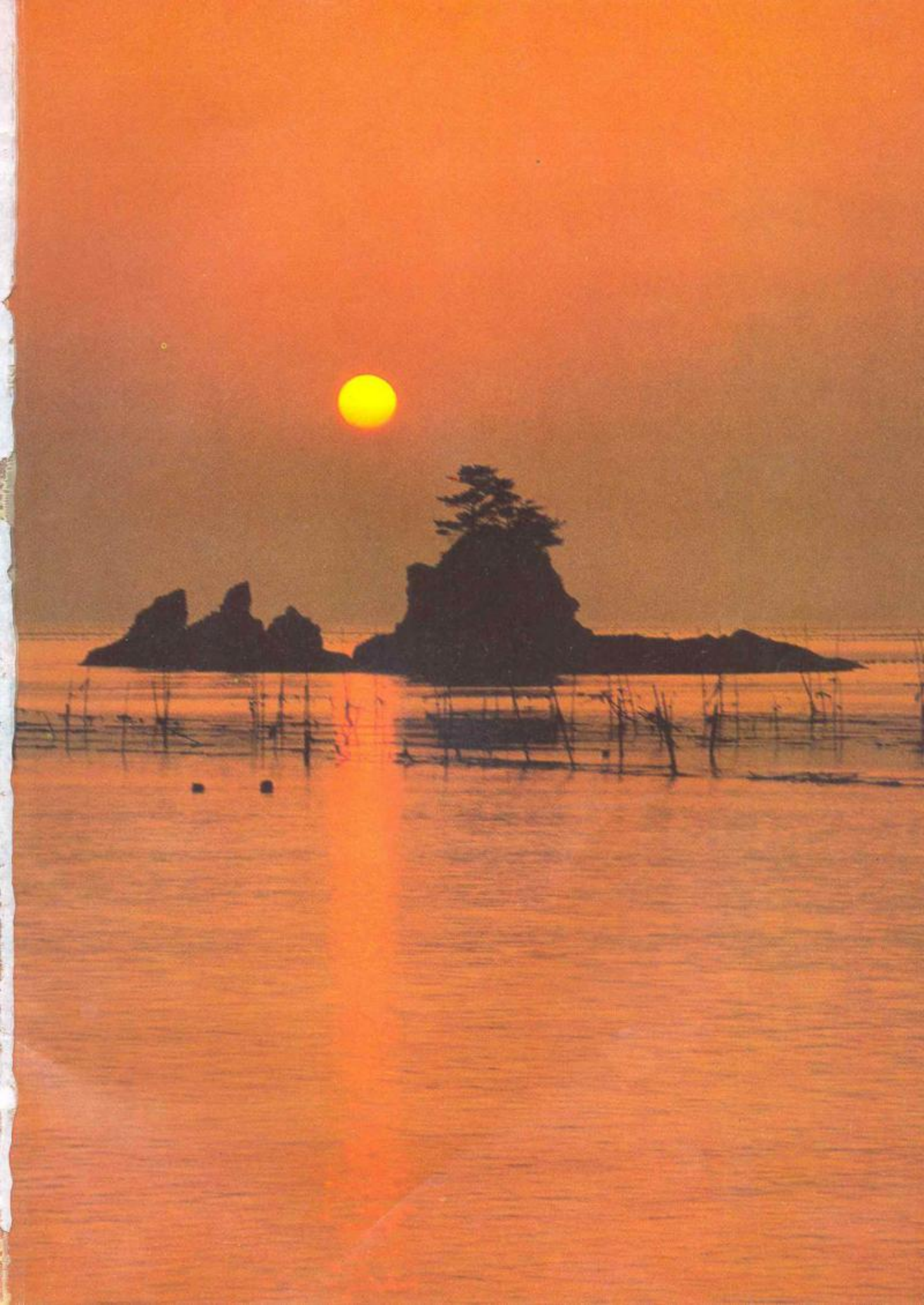
第 3 號
1994. 1

議政消息



高興郡議會







郡 旗



郡花(동백꽃)



郡木(유자나무)



郡鳥(비둘기)

議政消息

1994. 1. 제 3 호



高興郡議會

■ 의정화보	
■ 발 간 사	7
■ 신 년 사 / 의장 박 동 래	8
/ 군수 허 길 남	10
■ 군 일반현황	14
■ 의 회 현 황	15
■ 의원 제언·논단	17
■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처리하였습니다.	38
■ 위원회 활동 상황	53
■ 의정활동의 이모저모	73
■ 보도모음	83
■ 의회에 바란다	86
• 소외 당하는 주민들에게 따뜻함이 스며드는 사랑을 ...	86
• 나의제언	88
■ 군정질문 및 답변	90
■ 투고 한마디(小考).....	122
• 명산 팔영산 등산 안내	122
• 역할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127
■ 문화재 안내	129
• 봉래면 상록수림	
• 금탑사 비자나무 숲	
■ 알아들시다	130
• 고흥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 의원명단	135
■ 투고 및 방청 안내	



제25회 정기회
의사 진행 광경



94년 새해군정 방향을
연설하고 있는
허길남 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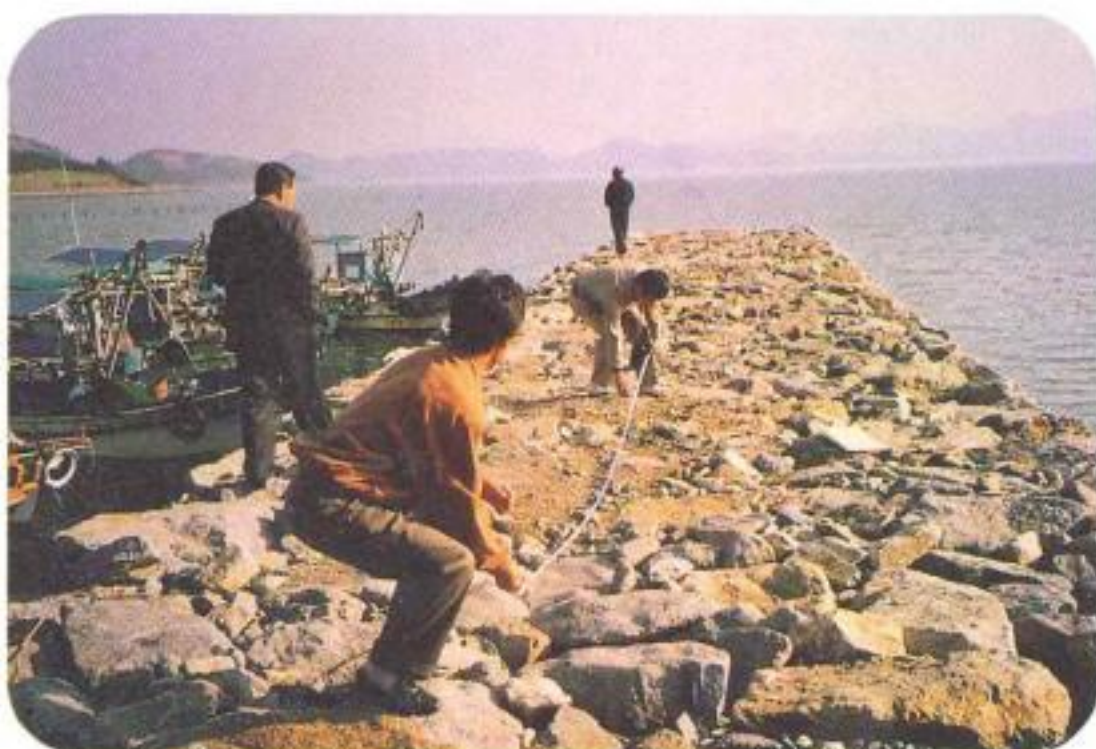
고흥군 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

의 정 보 고



도로포장 사업 현장 점검
<도화면 봉서-신기 마을간>

선착장 축조현장 점검
(대서면 장사마을)



92 세입·세출 결산 검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94본예산)



상임위원회 운영상황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대회



해외 선진의회 견학
(독일 하나우시의회)

(영국 쉘튼주의회)



고흥군의회 의정소식지 제 3호 발간에 즈음하여

1 991년 4월 15일 고흥군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세번의 해가 바뀌어 초대의회는 하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군민의 귀와 눈!

분출되는 의견과 민원은 물론 한편으로 언제 제몫을 할 것인가 하고 회의의 눈으로 바라보며 채찍하는 소리들!

그동안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경황없이 뛰면서 몸으로 체득하고 연구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어 이제 의회의 틀이 어느 정도 잡혀지고 있음은 나름대로 보람있게 생각하며 이는 의원들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그 보다 더 군민의 참여와 협조, 그리고 공직자의 지방자치 인식도가 중요한 성공요인이 아니었는가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백지장도 맞드는 정성이 모일때 한결같은 우리의 소망인 “발전된 선진고흥”, “풍요롭고 잘사는 고흥”은 필연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지난 93년 1년간 의회에서 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요약하여 작은 지면이지만 널리 알려 이해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군민과 함께 하는 매개체 역으로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면을 꾸며 보았습니다.

잘못한 일은 충고해 주시고 잘한 일은 격려해 가면서 더욱 의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협조를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과 지식으로 남은 임기동안 군민의 손과 발이되어 열심히 노력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본지 발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흥군의회 의정소식지 제3호 발간에 즈음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1994년 1월

고흥군의회 의장 박 동 래



애하는 군민 여러분!
친 오늘 찬연한 갑술년 새아침을 맞이하여 정중한
 마음으로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로 지방자치 실시 4년째를 맞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성숙되고 값진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 여러분께 희망과 믿
 음을 갖게하는 희망찬 1994년을 맞이하면서 국운 융성과 군민 모두의
 소원 성취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갑술년 새해는 정치·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속에 성장이라는 민족자존과 민주화합 그리고 통일
 번영의 새 시대의 장을 열어가는 희망찬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UR과고등 적잖은 시련도 예상되지만 정부발표에 의하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분석이고 보면 너무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국
 제화에 적응하는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모두 지혜와 결연한 의지를 결
 집하여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 되기도 한 해입니다.

이제 세계는 자유무역 체제로 국제 경쟁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치열해
 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고 임금에 생산성 저하라는 비경제적 요인에
 따라 힘든 일을 기피하고 소득에 걸맞지 않는 무분별한 과소비를 부추
 김으로써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루 속히 우리의 의식을 대전환하여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삶의 가
 치를 깨닫고 검소한 생활 기풍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의회 구성 초창기에 빚어졌던 구설수와 부정적인 시각들을 씻어내고 거기에 성숙된 자치의식을 접목시킬 지방의회 후반기 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민주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자기의 잘못된 구태의연한 악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마음과 건전한 정신으로 의정발전을 위해 각자 맡은바 일익을 담당할 책임과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군민의 편에서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오늘의 의정이 고흥의 미래상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의원과 함께 땀 흘려 일해 나갈 각오입니다.

또한 군민과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을 마련, 대화합의 장을 만들어 주민의 의견을 깊은 애정으로 파악하고 수렴하여 그 해결대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는 참모습을 보일 것이며, 상숙된 의회운영은 물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항상 가슴속에 새기며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라는 인식하에 의회운영이 형식과 권위를 앞세우는 낭비적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실로 아름다운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게 되므로 모든 의정과 군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빌어 마지 않으며, 갑술년 새해에도 군민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신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 1. 1

고흥군의회 의장 박 동 래



존

경하는 1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가족 여러분!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오늘 우리는 그 어느해 보다도 새로운 의욕과 희망에 넘치는 대망의 1994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모든 소원을 성취하시고,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정중한 마음으로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정열을 쏟아 일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 동안은, 나라 안에서나, 나라 밖에서나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왔던 격동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적으로는 32년만에 출범한 문민정부가, 새로운 도덕성과 정통성을 갖추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모든 분야에 걸쳐서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합리적인 제도를 과감하게 바로잡고, 고질적인 부정부리를 성역없이 척결하여 군민 생활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게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그동안 7년동안 이끌어온 UR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우리에게 수입개방이라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마는, 세계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무한 경쟁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으로는 문민시대에 걸맞는 의식개혁과 발상을 전환해 나가고, 나라 밖으로는 국가적인 사활이 걸려있는 국제 경쟁력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도 하루빨리 국제화·미래화·선진화를 향한 제2의 발전과 도약을 준

비해야 할 새로운 시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전체 면적의 40%가 농경지인 우리군은, 내년 7월이면 물밀듯이 밀어닥친 쌀을 비롯한 14개 기초 농산물을 앞두고 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뜻에서, 이제 수입만은 세계의 모든 새로운 무역 질서로서 바꿀수 없는 기정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농업은 우리의 정신문화요, 우리의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라는 차원에서 군정의 총체적인 역량을 농촌경제 활력화에 집중하고, 농정 현안을 군정의 제1의적 과제로 삼고, 새해 군정 방향을

첫째 국제화에 부응하는 자립 농수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을 강화, 특산품의 생산 확대 및 고품질화로 농어촌 소득을 향상하여, 문화 생활을 향유하는 전원 도시형 농어촌을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둘째 미래를 내다보는 조화로운 지역 개발에 있어서는

계속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지역특성, 지역 균형 개발의 원칙하에 사업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건설에 있어서는

지역 봉사는 지방정부가 책임진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군민의 생활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복지행정을 강화하여, 이웃돕기 운동을 확산·파급하고, 남의 말을 좋게하는 군민 정서를 순화하는 등, 사랑과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더불어 사는 밝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경로호친을 통한 새 군민상 정립에 있어서는

백행의 근본인 “효”의 생활화로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고향을 사랑하

는 마음과 함께 웃어른을 모실 줄 알고, “내 이웃을 내몸 같이”사랑할 줄 아는 경로효친 사상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오는 민속의 날에는 16개 읍면, 514개 마을마다, 40만 출향인사가 모두 자녀들과 함께 고향에 돌아와서 조상을 살펴보고, 웃어른들께 귀여운 손자손녀의 재롱을 보여 드리는 합동세배를 실시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우리 고래의 미풍양속을 다시 찾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고향을 심어주고, 산 충효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성숙한 지방문화 창조로 자치 기반을 정착함에 있어서는

’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변화가 예상되는 도와 군, 군과 군의 회와의 관계개선과, 재산관리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미리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 노력하며, 금년에는 행정쇄신작업을 더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행정의 일대 혁신으로 평가되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완전무결하게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째 문예체육의 진흥과 특색있는 관광개발입니다.

오랜 향토 고유의 전통문화와 풍부한 관광문화 자원을, 우리고장 3차 산업 발전의 토대로 삼아, 도덕면의 “한적들노래”, 금산면 “월포문굿농악”등 민속 보존회를 통한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보전과, 볼거리, 즐길거리, 배울거리가 풍부한 다채로운 관광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계절 체류형 휴양지로의 전문 휴양기능을 갖춘, 시설 유치를 위하여, 우리고장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풍부한 문화재와 자연경관 명소를 연계하여, 능가사 대웅전 보수, 운대 도요지 복원공사, 금탑사 극락전 보수공사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팔영산 개발, 나로도 연육·연도교를 이용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관광개발의 축으로 삼고, 가족 중심 1박2일 코스형

의 육상 및 해상관광지를 중점 개발하여, “농수산 발전을 바탕으로 한 세계속의 관광고흥”건설을 위하여, 벽돌 한장 한장 쌓는 마음으로 그 기틀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해동안의 군정을 회고하고, 새해의 군정을 설계하면서, 조금은 소외되고 낙후되었던, 이 지역이 오히려 후발의 잇점을 살려서, 개방화시대,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축복받은 땅으로 가꾸어질 수 있도록, 15만 군민이 혼신의 정열을 다하여, 보다 건강한 사회, 보다 질서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땀과 더 많은 힘을 쏟아 열심히 일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농수산 발전을 바탕으로 한, 세계속의 관광고흥 건설을 위하여, 벽돌 한장 한장 쌓아올린 자세로

- 소득키운 군정
- 함께 뛰는 군정
- 이어가는 충효
- 하나같은 화합의 기치로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새해와 함께, 군정발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이 있기를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의 건강을 바탕으로한 하시고 자 하는 모든 일들이, 최선을 다할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994년 1월 1일

고 흥 군 수 허 길 남

一 般 現 況

□ 面 積：745.9km²(全南의 6.3%)

田 86.2 畓 130.8 林野 464.9 其他 64.0

□ 人 口：126,916名(36,171世帶)

男 63,143 女 63,773

□ 行政區域：2邑 14面(4出張所) 131里 514마을

島嶼 173個所(有人 20, 無人 153)

□ 公 務 員：903名(2室 15課 4事業所)

本廳, 事業所 446, 邑面 457

□ 教育機關：89個校(學生數 23,328名)

初 60 · 中 21 · 高 8, 男 11,188 · 女 12,140

□ 文 化 財：29點(國家指定2, 道指定10, 其他17)

天然紀念物2, 有形文化財10, 紀念物10, 文化財資料7)

□ 產業構造：農村61%, 漁業15%, 商工業其他24%

— 特產物：高興柚子, 참다래, 마늘, 오이, 버섯, 柴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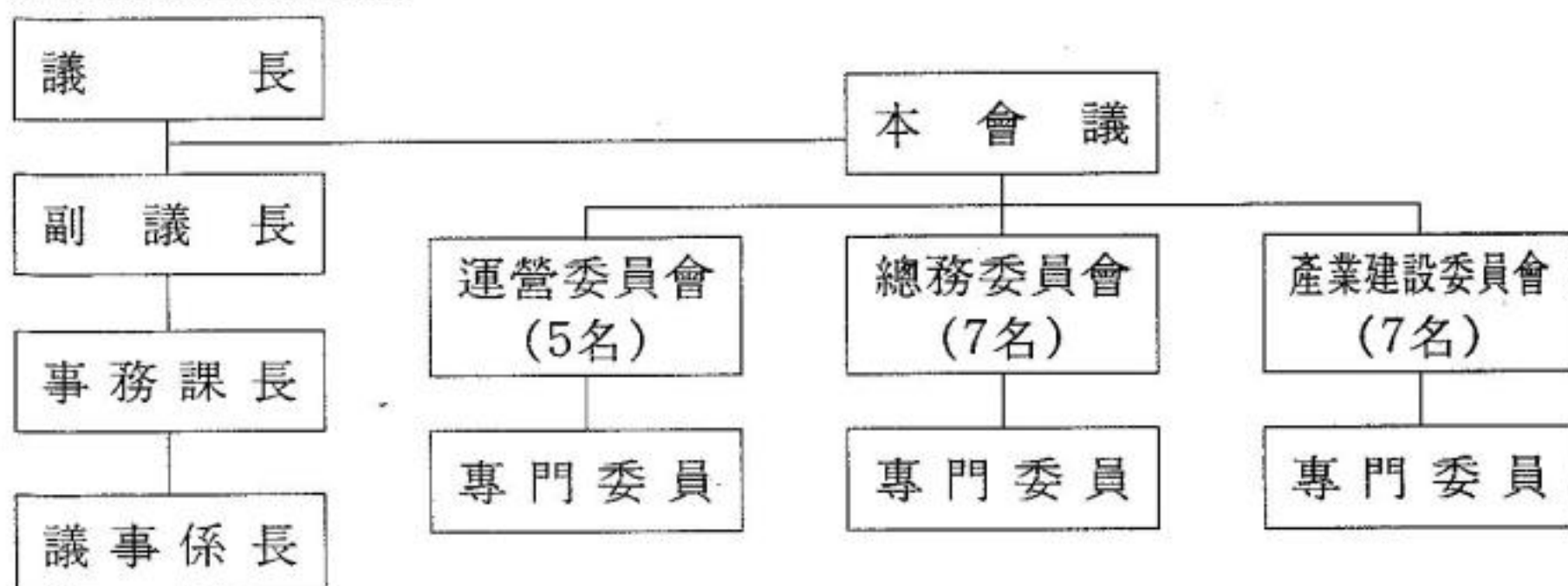
— 水產物：김, 미역, 멸치, 참치, 감성돔, 바지락, 굴 —

□ 財政規模：96,105百萬元('93對比 104%)

一般會計 78,065 特別會計 18,040 財政自立度 10.9%

議 會 現 況

議會構成 現況



청사 현황

位置：高興邑 玉下里 200番地(郡廳本館 4層)

區 分	面 積	備 考	區 分	面 積	備 考
本 會 議 場	198.3㎡		運 營 委 員 會 室	46.3㎡	
議 長 室	49.6㎡		總 務 委 員 會 室	29.8㎡	
副 議 長 室	29.8㎡		產 業 建 設 委 員 會 室	29.8㎡	
附 屬 室	16.5㎡		議 會 事 務 課	86.0㎡	
			放 送 室	14.9㎡	

事務課 職員現況

區分計	計	5 級	6 級	7 級	技 能 9等級	技 能 10等級	日 備
정원	13	3	2	2	3	3	
현원	13	3	2	2	1	3	2

제1대 군의회 구성 현황

전반기 의장단

• 의장 朴 彩 柱 • 부의장 俞 澤 根

상임위원회별 위원명단

위원회별	위원장	간 사	위 원
운 영 위 원 회	金 東 仁	柳 俊 相	朴東來, 崔亨文, 宋福助
총 무 위 원 회	宋 基 福	朴 東 來	申允植, 高林俊, 朴龍浩, 宋龍炫, 丁永杓
산업건설위원회	金 南 奎	宋 福 助	李京洙, 俞澤根, 柳俊相, 崔亨文, 金善圭

후반기 의장단

• 의장 朴 東 來 • 부의장 金 東 仁

상임위원회별 위원명단

위원회별	위원장	간 사	위 원
운 영 위 원 회	宋 基 福	丁 永 杓	金善圭, 崔亨文, 宋龍炫
총 무 위 원 회	高 林 俊	金 善 圭	金南奎, 金東仁, 朴彩柱, 朴龍浩, 丁永杓
산업건설위원회	申 允 植	崔 亨 文	李京洙, 俞澤根, 柳俊相, 宋福助, 宋龍炫

議 員

提言·論壇

☐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한 우리의 자세 (부의장 김동인)

☐ 조상들이 애창한 호남가 (운영위원장 송기복)

☐ 나의 고흥 발전관 (총무위원장 고임준)

☐ 성급한 미봉책보다는 농어민의 신뢰를 (산업건설위원장 신윤식)

☐ 새로운 삶의 자세 (의 원 이경수)

☐ 지난 의정을 자성하며 (의 원 유택근)

☐ 우리군 수산발전을 위한 나의제언 (의 원 김남규)

☐ 우리가 하나되어 (의 원 류준상)

☐ 참된 새해를 바라면서 (의 원 최형문)

☐ 전반기 의정활동을 뒤돌아 보면서 (의 원 박채주)

☐ 의정활동 3년을 회고해 보면서 (의 원 김선규)

☐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의 원 송복조)

☐ 넘어지는 것이 무서우면 걸을 수 없다 (의 원 박용호)

☐ 후손에게 물려줄 밝은 내일의

복지 고흥건설을 위하여 (의 원 송용현)

☐ 선진 유럽을 순방하고 (의 원 정영표)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한
우리의 자세』

부의장 김 동 인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벌써 3년이 되었다.

일찌기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의회제도를 나름대로 운영함으로써 이땅에 지방자치의 새싹을 뿌리 내리게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의원 개개인의 생업에 지장을 감내하면서까지 개척자적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지성을 다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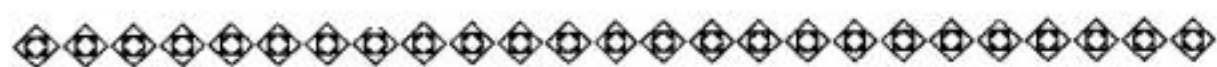
그렇게 되기까지 때로는 의회와 집행부 양자간에 사소한 갈등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어느 한쪽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가리기 전에 시행상 부딪혔던 마찰은 경험 부족과 시행 착오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 지방 행정이 중앙 집권적 제도에 일변도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던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행정서비스가 직접 피부에 느껴지도록 가까운 거리에 밀착하게 되었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불편을 느꼈던 일상생활

중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편의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되고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발아된 지방자치의 새싹이 민주주의가 만개한 거목으로 키우기 위해 3년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활속의 자치가 될 수 있도록 자치제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기관을 착실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며 모든 행정에 군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므로써 중앙권력 구조아래 하달 행정지시 제도에서 아래로부터 권력구조적 개혁을 이룩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요구하는 각종 사항에 대한 행정적 처리를 빠른 시간내에 가장 현실적이고 생산적으로 처리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각계각층 주민들의 여론은 물론 집행부의 여론 수렴을 통하여 더 많은 생활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민이 주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어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과 삼위일체가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속에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 의원 모두



는 단합된 모습과 일체감속에 한치의 사심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출신 지역에 억매이지 않는 글자 그대로 대의 기관의 이미지를 새롭게 다져 지역 균형 발전과 의회문화 정착에 온 정열을 불태워 나가야겠다.

그렇게하여 군민의 신뢰속에 우리 사회가 인정과 사랑이 넘친 사회로 그리고 번영과 진실된 사회를 만들어 훈훈한 고흥인의 긍지를 대내외에 유감없이 발휘했으면 한다.



『祖上들이 愛唱한
湖南歌』

— 小 考 —

운영위원장
송 기 복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깝고 정다운 곳이 부모형제와 같이 대대로 살던 자기 고향이리라!

특히 요사이 고향을 그리는 아름답고 즐거운 노래들이 많이 보급되는데 시대에 따라 노래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으나 고향을 사랑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

내 어린 시절에는 격조관계없이 아무데서나 창을했고 광복이후부터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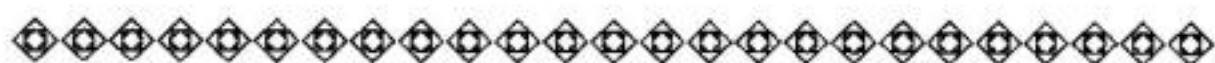
가 주류를 이루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고향을 찬미한 노래중 호남가처럼 인정미 넘치고 미풍양속과 산명수려한 풍치를 예찬하는 애국가사 이외는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호남가는 정조(正祖) 조때 이서구(李書九) 전라감사(뒷날 우의정)가 전라도 40고을의 이름을 인용 효우지풍과 순후지속을 찬미하고 농상을 장려하여 백성이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정사를 펴려함에 있었다 한다.

옛일을 되새겨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어른들께 듣고 자문을 받아 호남가의 가사를 옮겨 본다.

「咸平天地 늙은 몸이 光州故郷보려 하고 濟州漁船 빌어타고 海南으로 건너 갈제 興陽에 돌는 해는 寶城에 비쳐있고 高山의 아침 안개 靈巖을 둘러있네 泰仁하신 우리先君 醫藥을 長興하니 三台六卿이 順天心이요 方伯守令이 鎭安縣이라 高敞城에 높이 앉아 羅州風景 바라보니 萬丈雲峯 높이 솟아 層層한곳은 益山이요 百里潭陽 흐르는 물은 구비구비 萬頃인데 龍潭의 맑은 물은 이 아니 龍安치며 綾州의 붉은 꽃은 골골마다 錦山이라 南原에 봄이



들어 各色花草茂長하니 나무나무任實
이요 가지가지玉果로다 風俗은 和順이
요 人心은 咸悅인데 奇花는 茂朱하고
四海는 靈光이라 昌平의 좋은 世上 務
安으로 일삼으니 士農工商樂安이요 求
禮(父子)兄弟同福이라 康津의 商賈船
은 珍島로 건너갈제 金溝金을 쌓인게
金堤로다 農事하던 沃溝百姓 臨陂상의
돌렸으니 거드령거리고 놀아보자.

이 얼마나 구성진 가사인가? 여기에 가락을 붙이면 실로 금상첨화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천경계 구비구비 꾸밈없이 지명에
따라 엮어논 가사를 읊을적마다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눈여겨 본
듯하여 감회가 새롭다.

봉건주의 사회에다 기강이 해이된 이조말기에 탐관오리가 일세를 풍미하던때 감사(도지사)라는 지위는 실로 막강하여 삼권을 장악하였고 백성들의 생살여탈권을 가졌으니 무엇을 구한들 얻지 못하며 무엇을 하고자 한들 뜻을 이루지 못하랴만 이서구 감사는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신명을 바치고자 한 관리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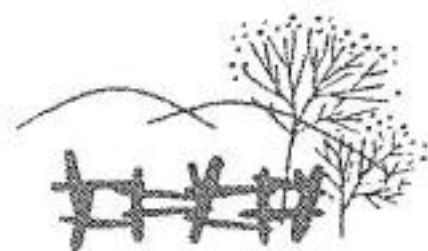
전라도 감사로 부임하자 이 노래를
지어 농산 어촌에서 백성들이 부르며
생업을 즐기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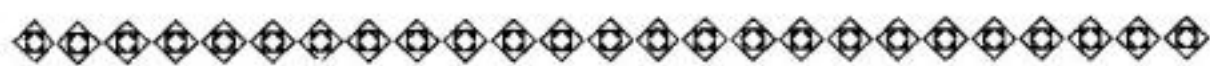
그 애국애족의 정신을 오늘의 관료
들로 하여금 두고두고 좌우명삼아 전

승합이 마땅하리라.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 개인주의 사상과 지역이기주의가 함께 팽배하여 지난날의 미풍양속이 자취를 감추어 오직 내 잘못을 숨기고 남만 탓하며 좋은 일은 내가 했다고 겨우 듣기만 하던 일도 자기가 생각해 서 성사시킨냥 하는 풍조에 덩달아 뛰 노는 약삭 빠른 인기위주의 관료나 정도아닌 편법을 이용 일과성 깜짝쇼로 사이비 위민(僞民)정사를 펴는 자나 안일 무사하게 나날을 보내며 신상만 돌아보다 대형사고로 백성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여론에 영치면 그때서야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이나 묻는 오늘의 많은 관료와는 아주 대조적인 고급관리며 당대의 현신이 바로 이서구 감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우리 사회에도 학덕이 고루
갖춘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어 민생고
해결을 우선하고 강상을 바로잡아 바
르고 밝은 세상되어 우리 모두가 사람
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생각 간절
할 따름이다.





『나의고흥 발전관』

총무위원장
고 임 준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고흥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농수산물 생산기반 시설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라고 본다.

특히 우리군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로써 76%가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수산물 군이면서도 농업기반 시설이 취약함은 물론 수산물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항만 시설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정부예산 지원이 부족하여 이 모든것들이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우리군의 농어촌 현실은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이유로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농어촌의 젊은층이 모두 도회지로 떠나는 이농현상으로 날로 농어촌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노동력의 상실과 노동력의 고령화로 군민소득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UR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우리에게도 수입개방이라는 큰 충격을 주었으나 세계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재편하고 무한 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

아무튼 우리군의 생활구조가 농수산업에 근간을 두고 있기에 고소득 작목개발과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국제화에 부응하는 농수산물 기반을 구축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특산품의 생산확대 및 고품질화로 농어촌 소득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군의 특성을 살려 미래를 내다보는 관광산업에 정부지원만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과감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미 대단위 사업으로 추진중인 나로도 연육교 공사를 차질없이 완공한 후 기암절벽으로 구성된 절묘한 팔영산을 국립공원으로 추가 지정받아 녹동에서 소록도를 거쳐 금산 연육교를 가설하여 기 국가에서 지정된 국립해상공원과 연계하여 그 경내에 산재되어 있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골프장, 콘도, 관광호텔등 유락시설을 갖추기만

의 부채탕감이란 교언영색(巧言令色)이 주된것이라고 본다.

정부도 농어촌 구조개선이다. 신농정이다 요란하게 대책을 내기는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것인지도 막연한터에 미사여구와 같은 좋은 과제만 잔뜩 나열하는 차원에서 맴돌고 있지 않았는가?

농어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함에도 거의 담보상태가 아니었는가.

정치권이나 언론계나 지도층에서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소위 국회에서도 “개방불가, 농어촌 살리기”란 케치 프레이즈만 복창했지 농어민들의 신뢰 회복작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본다.

아무리 눈앞의 현실이 중요하고 추곡수매문제와 농가의 부채문제가 심각하다해도 사탕발림식 대책으로는 안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대부분이 그런식의 대책에만 집착했고 무조건 쌀시장개방불가 입장만 외쳐대지 않았는가?

그래놓고 이제와서는 가장 농민을 사랑하고 농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온 양 쌀시장 개방이 문이 열리는 순간 순교자(殉敎者)처럼 행세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가장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괴롭히는 일도 있다.

가장 위한다는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경우도 많다. 사랑하고 위하려면 사랑의 지혜가 있어야 하고 위할수 있는 지혜와 준비가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딸을 위하고 보호한다고 골방에 가두어 놓고 피골이 상접하도록 만들어서야 딸을 위하는 것이 아니잖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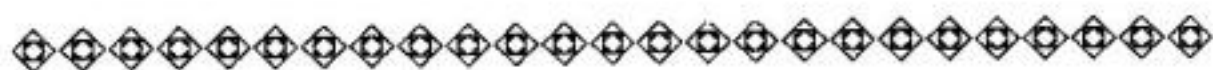
딸이 원만하게 성숙하도록 지·덕·체 등 여러가지 면에서 가꾸고 북돋우며 닦아야 되는것이 아닌가?

그것이 딸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본다.

그런데 언젠가는 닥쳐오고야말 개방의 순간을 말만 꺼내도 매국노인양 매도해댄 사람이 누구였던가를. 실력이 없는 명분론은 허세에 불과하다. 준비없는 주권론은 자멸의 길이기도 하다.

기껏해야 시간별기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을 버는것도 다른 대비책이 있고서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무 대비책도 마련해 두지않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개방을 하고 지난 12월 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허둥대는 꼴이 아닌가. 우리 농업의 사활이 걸려있는 UR극복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제 더 감추고 더 멀고 더 보탬(가식)



대에 박차를 가하여야겠습니다.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여 심기일전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내는 한 해
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한말과 같이 축복받는 고흥, 인심 좋고
살기좋은 고흥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
여 고통을 분담하면서 한마음되어 매
진하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부디 군민여러분 모두께서는 소원
성취하시고 각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
시길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
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의정을
自省하며

의원 유택근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어언 3
년이란 세월을 향해해 왔다. 그동안 익
숙치 못한 향해사처럼 제대로 향로를
찾지 못하고 오류도 범하고 시행착오
도 범해가며 방황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조금은 익숙해져 주민
들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의회상과 실지
의원의 입장으로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의회의 기능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써 집행부를 견제하며 주민을 위한 행
정을 하는가, 예산은 효율적으로 타당
성 있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감시 감독
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각 읍면에서 선출된 의원은 면의원이
아닌 군의원 인 것이다.

그러나 과연 군의원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자성해 본다.

의원들이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현실을 볼때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면
서도 어쩔수 없는게 자기를 이자리에

議會用語解説

■ 過半數

구체적으로 半數를 넘는수로써
2분의 1이상과 다른 개념이다.

예를들면 16명에 대한 過半數는
9명이고 19명에 대한 過半數는
10명이다.

(즉,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切上한
수가 과반수가 된다)

있게 해준 주민들이 눈앞에 제일 먼저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남은 임기가 1년이다.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성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의원들도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고흥군 발전이 과연 무엇인가 눈을 크게 떠야 할 것 같다.

한편, 집행부를 되돌아 보고싶다. 수십년동안 관습과 타성에 젖어 쉽게 헤어나기란 무척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3년이란 긴 시간이 흘러 갔는데도 의회를 보는 집행부의 눈은 아직도 밝지 못하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다른 임무와 권리가 있다. 군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는 마음은 다를 수 없다. 따라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며, 격려하고, 채찍질 하면서 동반항해를 해야 할진데...

의회를 보는 집행부는 과연 그러한
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눈앞에 보이면
생각나고 보이지 않으면 새까맣게 잊
어버리는 의식조차 없는 대단히 좋지
못한 관습이 아직도 남아있다.

행정 편의주의, 승진을 위한 행정 이
모든 것들이 타성에 젖은 이기주의적
발상이 팽배한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공무원이란

사명감과 내 지역이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라며 우리 모두다 힘을 합하여 선진고흥, 관광고흥, 밝은 고흥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면서...



우리군 수산발전을
위한 나의 제언

의원 김 남 규

우리군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서 해안선이 669km나 되며 공해 없는 청정해역등 천혜의 조건을 갖춘 전형적인 수산군이라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인구 감소와 어촌 인구의 노령화로 어선어업은 근로환경이 열악하여 선원확보가 어려워 이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양식어장 개발이 긴요)으로 과감하게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수산물은 모든 국민의 건강식품 선호로 수산식품에 대한 수산물의 국내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생산을 위하여 기술개

발의 진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2000년대를 향한 고품수산물 발전을 위하여 잠재수산자원의 개발로 풍요로운 생활터전을 구축하고 수산기술 보급으로 활기찬 수산진흥사업을 확대해야 하며 불법어업 추방과 어장환경 정화로 바다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수산업을 바탕으로 한 관광고흥건설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중점적 세부 실천사항으로 어촌의 정주생활권 조성과 어민 불편사항을 발굴조기해결로 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살기좋은 새어촌을 건설해야겠으며, 어항시설 확충과 어로시설의 현대화로 어업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조업능력을 제고하고, 전통 수산물 개발보급확대와 수산물 유통보급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해야겠으며, 어민의식 개혁과 어업질서 정착으로 건전한 어민상을 정립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자력성장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리라 확신한다.

아울러 어장훼손 방지와 바다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불법어업방지로 어족자원을 보호하며 신품종개발과 품질·제품 고급화를 유도하여 수산자원 조성과 양질의 수산물을 생

산하으로써 군민소득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분야별 주요과제로는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수산물 가공공장사업 추진으로 수산물 제값받기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며 수산자원 보호 및 자원조성을 위한 고기집(인공어초)시설확대와 수산종묘 대량생산 및 방류체계 확립등 어장훼손 방지 및 바다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수산기술 고도화 및 기르는 어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어류양식 시설확대 양질의 수산증양식 시설확충, 그리고 토산 내수면 양식기술 보급등 복합양식을 육성하고, 공동어장과 낚시터 개발과 어촌관광 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어업구조를 개선하고 굴 채묘시설확대 그리고 수출 유망 품목사업을 확대하여 수입개방에 대한 전향적 대응을 하므로써 2000년대의 부유한 수산군의 꿈을 실현할 것으로 보아 우리 16명 의원 모두에게 본 취지를 충분히 설명주지하여 수산발전에 전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우리가 하나되어

의원 류준상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세계의 모든 농산물은 자유무역화 하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속에서
의 우리농산물 현주소를 다시한번 점
검하여야만 한다.

품질은 우수한지, 생산비는 적정한지, 작목의 선택은 과연 잘 되었는지 등의 다각적인 검토와 점검의 토대 위에서 과연 우리농산물이 국제 경쟁력 면에서 뒤지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런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하여야만 한다.

노동집약적에 근거를 두고 무조건
하면 된다는 밀어 붙이기식의 근시안
적인 방법만으로는 이제 승리할 수가
없다.

세계의 모든 산업은 이제 최첨단의 정보와 자동기와 분석에 의해서 승패를 좌우한다.

이제 우리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농민 스스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여야만 한다.

남이 자기를 절대로 대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농민이 제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한계는 있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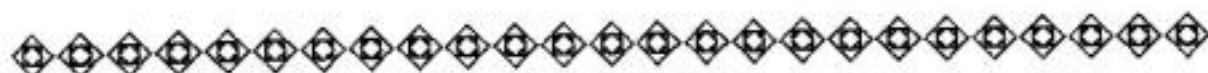
외국처럼 광대한 농토와 농산물 생산에 알맞는 천연의 기후조건을 우리 농촌은 갖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이고 더구나 우리 농촌의 농업정보는 선진국의 우수한 농업정보에 도저히 미칠 수 없기 때문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정부는 우리농촌을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

장관 한 사람이 바뀔 때마다 농업정책이 바뀌어 지는것도 이젠 진절머리가 났고, 선거때마다 1회용으로 사용하는 공약에도 공허하게 웃을 수 밖에 없는데도 대안제시는 커녕 끝까지 농산물 수입만큼은 막겠다는 정부의 거짓부렁에 분노할 힘마저도 잃어버린 우리 농민을....

정부는 이제 진심으로 도와주어야만 한다.

우리는 속을만큼 속았고, 지칠만큼 지친 끝에 천길 벼랑위를 정부와 농민은 이제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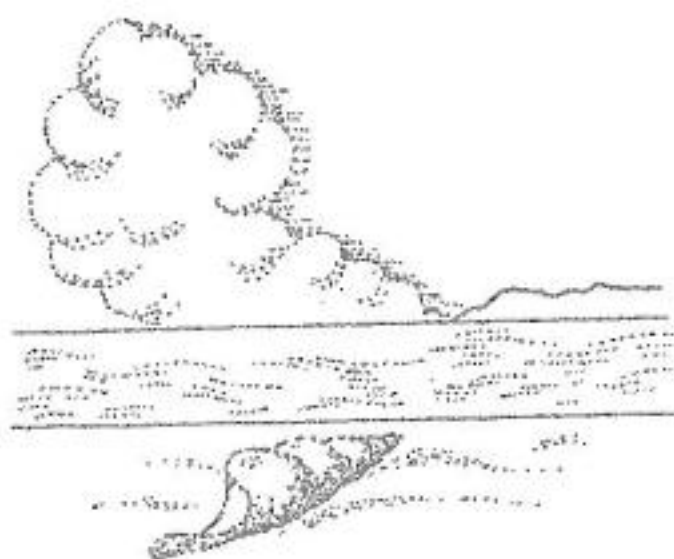
한쪽이 밭을 잘못 헛 디디면 영원히
같이 추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변해야만 한다.

서로가 이해해야 하고, 너와 나에서
우리로, 우리는 또 하나다라는 인식을
반드시 하여야만 한다.

세계는 급변하고 국가도 우리농촌도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농민은 근면 성실하게 노력하여
보다 우수한 양질의 농산물을 싼값으로
생산해 내야하고 우리 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작목
을 선택하여 주고, 정보와 기술지도와
과감한 구조개선에 따른 영농기계화와
농업투자에 의한 자본을 서슴없이 대
폭적으로 지원하여 주어서 그야말로
21세기를 향한 복지농촌을 구현하는데
“우리가 하나되어” 찬란한 농촌건설에
합심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된 새해를
바라면서...』

의원 최 형 문

어느새 한해가 또 지나가 버린다. 우
리에게 허락된 세월의 한자락이 이렇
게 소멸되어 간다.

의타와 의존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
기 존재의 독립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거듭 실험하면서 자아의 성찰을 다지
게 해야 할때다.

안으로 거두어 들임이 없다면 사람
은 여물지 않는다. 여물지 않은 빈껍질
을 가리켜 우리는 굳이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일에서
안락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은 올바
른 삶이고 안락 대신 불만과 불안이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에게도 덕
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의 태
도는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

진실이 맛중의 맛이고 지혜롭게 사
는 것이 최상의 생활이 될 것이라는
가르침 또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삶의
교훈이다.

한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한 이때 우

리는 이 평범한 교훈을 통해 우리들 생애의 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덕을 쌓으며 어떤 관계를 이루어 왔는지 한번쯤은 되돌아 보아야 하지 않을까?

침잠(沈潛)의 겨울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할 것인지도 함께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대지의 봄은 계절의 질서를 따라 어김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우리들 인간의 봄은 인간 스스로의 창조적인 노력없이 찾아오지도 피어나지도 않는다.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 가능성을 계발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잘나고 못난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루에 아침은 두번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모두 때가 있으니 각자가 맡은 바 일에 충실할 때 성숙의 열매를 딸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은 자신을 잃어버릴때 질서와 화합, 윤리와 도덕마저도 잃어버린다고 한다. 농을 줄 알고 비울 줄 아는 것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를 창출하고 자신과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는 진리요, 지혜인 것을...

행복은 저 산너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생활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에 평상심(平常心)이 도(道)라고 선현들은 알려주고 있다.

우린 세월이 흘러간다고 얘기하지만 그 표현도 맞겠으나, 다시보면 세월은 항상 그대로인데 우리들의 모습과 주위의 현상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항상 그대로인 것이 세상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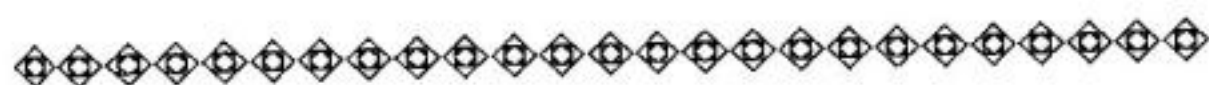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찬양하여 서로를 계발하고 키워 나보다 괴롭고 고통스럽게 사는 이를 생각하는 문을 열어보자.

『전반기 의정활동을
뒤돌아 보면서』

의원 박 채 주

4년의 임기 전반기가 어느새 지나고
값싼 외국 농산물이 밀어닥치는 우루
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을 비롯하여 무엇
인가 우리 농촌의 힘으로는 무척 감당
하기 어려운 시련의 한해가 시작되었
다.

돌이켜보면 고흥군의회 초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의 운영방법과 의회의 역할과 기능등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충분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하면되겠지’하는 막연한 자신감과 기



의원제언논단

대감을 갖고 군민과 군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성과는 크게 나타남이 없고 오직 나 자신을 지탱하기 위한 몸부림인 것 같은 죄스러운 심정 뿐이다.

흔히 지방자치는 지역의 모든 일을 지역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의원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여과없이 행정에 반영하는 과정이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으로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에 기여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나,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욕구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군의 재정형편으로 그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그로인한 의원의 해결능력 역시 압당한 벽에 부딪히는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때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로 대폭 이양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도 그 폭을 넓혀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변혁과 개혁의 무한 경쟁시대를 맞고 있으며 UR협상타결은 우리 농민에게 절망과 실의의 아픔을 가중시켜주고 농촌을 희망없는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농촌으로 부활하기 위하여서는 정부의 장기

적이고 근본적인 농촌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변화의 물결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 남아야 할 「생존」의 문제인 것이며 이는 곧 「변해야 산다」는 것이기에 농민은 농촌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용기를 갖고 우리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살기좋은 농촌의 튼튼한 뿌리를 더 깊숙히 내릴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그 어느때 보다 자기의 희생과 봉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며, 아울러 우리의 의정활동도 전반기를 거울 삼아 집행기관과는 대립적인 개념보다는 상호협력적이고 보완적인 입장에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축적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십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의정활동 3년을
회고해 보면서』

의원 김 선 규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난다.
풀뿌리 민주주의 역군이 되겠다고
지역주민에게 호소하고 다짐하던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언 3년이란 세월이
흘러 의원임기 1년여를 남겨둔채 갑술
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3년간의 의
정활동을 뒤돌아 보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꼭 실천하여야 할 의정활동
을 나름대로 구상해 본다.

의원으로 당선된 당시 포부와 의욕은 대단하였지만 막상 의정에 임하고 보니 일천한 지방자치가 경험도 전무한 상태에서 출발하였고, 생소한 의정생활이기에 모든것을 배우고 연구해서 독창적인 의정활동이란 그리 쉽지만은 않아 초창기 의원 본연의 임무수행을 완전무결하게 완수하지 못한점을 솔직히 자성해 본다.

그러나 의회 구성 이후의 행정은 종전보다 월등히 개선 또는 향상되었음을 군민에게 알리고자 몇가지 소개해드리자면

○ 모든 지역개발 사업 책정에 있어

지역적 균형에 적정을 기하고 공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 대민 민원행정 서비스가 봉사정신과 공정성에 입각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보며

○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지출이 지양되고 있어 군민을 위해 군립하는 행정에서 군민을 우선하는 봉사행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바로 지방화시대를 인식한 공무원들의 의식이 일대 전환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의회 구성 이후의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문민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간 의정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하지 못한 일들을 남은 임기동안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하고자 하며,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개발로 군민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선진 고품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역량과 성실한 노력을 기우려 군민복지향상을 밑바탕으로한 의정을 펼쳐 의원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므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의회문화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의원 송복조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민주
행정의 초석을 다져온지가 벌써 3년이
다 되었다.

그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한 지방정부가 관치행정의 방식에서 주민 위주행정으로 탈바꿈해가고 있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감시를 받으며로써 민주행정으로 양적·질적 성장과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성장과 변화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지역주민과 같이 호흡을 해온 지방의회의 역할이 컸다고 자부해 본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직접 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반쪽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의 지방자치는 더러 파행과 오류가 점철되어 앞날을 불안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자치제는 매우 밝은 전망이며 속도감있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95년도 자치단체장이 직선되면 의회와 자치단체가 공동체 의식으로 주민과

삼위일체가 되어 진정 민을 위한 행정
이 펼쳐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정착되기란 많은 세월이 필요하므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치 말자, 흔히 학자들은 지자제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데는 약50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는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들의 사고와 관습이 하루 아침에 바뀌어 지는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50년이란 세월은 지금 태어난 어린아이가 사회의 주역이 될 시기이니 어려서부터 자치교육을 받고 성장한 세대에 가서야 비로소 지방자치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작금의 지방현실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일변도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도·농간 빈부의 격차로 이농현상이 심하되는등 우리의 농촌은 빈곤과 노동력 노령화만 선물로 남게 되었다.

옛말에 나라는 망해도 산하는 그대로
라고 했듯이 지방이 없이는 중앙도 없
고 대한민국도 없다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를 낳아준 고훈군 발전과 지역활성
화를 위해 초대 지방의회 의원의 사명
을 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 의존형에서
벗어나 재정자립을 위한 세수증대사업
을 지속적으로 연구 추진해 가야할 것
이며, 지역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 지

역개발의 원동력으로 삼아 현재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계속성과 우리지역의 기후, 풍토, 주민성, 경제기반등의 독창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개발로 다수 주민이 동참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군 행정 쇄신의 정착으로 지역을 활성화 해 나가야 할 것이며, UR태풍속에 들어간 우리의 농촌을 지키고 농어민을 위해 모든 지혜와 혼신의 노력으로 5천년 역사의 농사문화 전통을 이어 살기 좋은 고향 농촌 가꾸기에 내자신은 물론, 우리 군민과 모든 의원들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넘어지는 것이
무서우면 걸을
수 없다

의원 박용호

'70년도와 '93년도 고흥군의 인구, 예산, 공무원 수를 살펴보면은 '70년도에 우리군의 인구는 228,879명에서 '93년 126,916명으로 101,963명이 줄었음에도 공무원수는 '70년도에 인구 587명당 1명꼴인 390명에서 '93년도 인구 141명당 1명으로 513명이 늘어난 903명이다.

예산은 '70년 당초예산이 4억7천6백 87만원에서 195배가 불어난 928억1천 13만4천원으로 엄청나게 불어났고, 행정조직(군)은 11개 실과소에서 21개 실과소로 늘어났다. 이와같이 인구는 1만1천명이 줄었어도 직재와 공무원수, 예산은 역비례로 늘어났으나, 수혜를 보는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체감감각은 예전과 별로 나아졌다고 느낄수가 없다.

현 지방자치단체들의 업무가 자체적인 고유사무(40% 이내)보다는 위임사무가 1.5배나 많은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중앙이나 도로부터의 행정 권한 위임, 지방 행정수요의 증대다양화, 분산화, 자율화되는 행정체제 및 정보화, 기술화, 국제화등으로 인해 과거의 광역(도) 및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중개자적 역할에서 벗어나, 군민의 일체감과 긍지부여, 군민이 구심점제공, 지역경제의 활성화, 군정서비스의 증대등의 독자적인 일을 개척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해 여름 휴가 때 읽은 것으로 전해지는 「지방(시골)의 논리」라는 책속에 일본의 이와쿠니

이즈모 시장이 쓴 글의 제목이다.

그는 이글에서 「행정에서 결여돼 있는 것은 기업경영의 감각이다. 관청에는 경쟁상대가 없다. 말하자면 완전한 보호산업이다. 경쟁이 없는 보호산업은 아무래도 코스트(cost)의식이 희박하다」고 말하고 있다.

보험회사원들이 보험모집 실적이 나쁘면 바로 좌천되거나 급료가 줄어든다.

그런데 공무원은 그러한 감각이 무뎌 뿐 아니라 스피드 의식 즉, 속도개념(일을 가급적이면 능률적으로 빨리 하려는 그런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안되면 내일, 내일 안되면 금년에,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하면 된다.”는 식의 소위 “세월이 좀먹냐”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빨리 해야 할 일을 느슨하게 처리하고 정작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은 간단히 해치워 버린데 대해 더 큰 문제가 있으며, 의회에서 답변을 할 때 “연구검토하겠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선처하겠습니다.”의 두리뭉실한 답변등은 가관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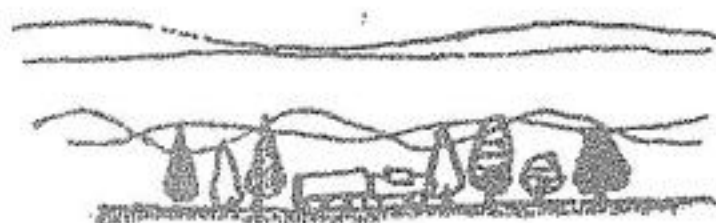
W이론에서 신바람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일을 통해서 신바람이 나 있는 사람, 일을 하지

않으면 좀이 쑤셔서 못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일을 해 보면 보람이 있고, 보람이 있으면 재미가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에 파묻히게 된다. 그것이 신바람이다.

일을 할 때도 집행부에서는 하늘만 쳐다보고 예산이 없다, 권한이 없다, 의회와, 윗사람이 들어 줄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해서 미리 체념해 버린 나머지 시도도 안해보고 한술 더떠서 적당하게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솔직히 없지않다. 대단한 유감이다.

문민시대 2차년도에 즈음하여 우리(의회, 집행부)에게 개선할 점이 있다면 솔직하고 겸허하게 시인하고 다 함께 새로운 변신을 위한 혁신을 결행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해서는 걸을 수도 없다.”는 말을 되새기며 미래의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 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의회, 집행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전기로 삼고 갑술년에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힘차게 전진하자.





『후손에게 물려줄
밝은 내일의 복지
고흥건설을 위하여』

의원 송 용 현

희망과 서기 넘치는 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역사는 우리에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제 질서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할 시련과 도전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91년 4월 15일 개원된 군의회는 3년의 짧은 활동기간에 군정을 파악하고 연구하고 배워가면서 현장을 뛰어다니며 나름대로 고된기간이었으나 그런데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받는 부분도 있었는가 하면, 시행착오나 미흡한 점도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하겠습니다.

지난 3년의 의정활동이 15만 군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상 정립기간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의회의 참모습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시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이제부터는 지역의 현실문제를 토의하고 아래로부터 민의가 반영되는 개혁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앙정부의 지시와 감독만으로 의식하던 지방행정이 이제는 주민의 참여속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없이 고루

개발되고, 고루 잘사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면서 현장위주의 참다운 봉사행정이 수행되어 행정관청이 주민에게 다정한 이웃이 되는 성숙한 자치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회와 위기는 같이 온다고 합니다. UR협상을 비롯한 국제화, 개방화가 주는 도전을 발전의 좋은 기회로 살려 개혁과 변화앞에 무기력한 관객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살기좋은 미래의 복지 고품건설을 위하여는 군민의 뜻과 행정과 의정이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우리 모두 고통을 감내하며 제2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이 올바르게 수렴되어 반영되는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坐密室 하더라도 如通街”란 말과 같이 밀실에 앉아 있더라도 많은 사람이 다니는 네거리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늘진 곳이 없이 적은소리도 크게 들어가며 편견이 없는 행정서비스가 중요한 과제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정직하고 땀흘린자가 대우받
는 희망찬 지역사회가 건설되도록 군민과
행정부, 그리고 의회가 능력을 불태우는
데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미력하나
마 남은 임기동안 후손에게 물려줄 밝은
미래의 복지고흥건설을 위하여 보람찬 의
정활동이 되도록 정력을 다 바칠것을 스
스로 다짐해 봅니다.



선진 유럽을 순방하고

의원 정 영 표

1993. 7. 19 ~ 7. 27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선진화 되어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연구비교 분석과 의회운영의 효율성,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관광 수익의 운영제도, 교통 및 환경정화 대책등 지방자치 완성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고찰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를 차례로 방문하였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과학, 산업, 기술혁명으로 경제 부국이 되었고 관광수입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성은 질서의식이 철저하게 정착되어 있고 선출된 의원이나 모든 공무원의 대주민 최대 서비스는 밝고 명랑한 사회 풍토조성과 상호신뢰를 확보하고 있어 선진화 및 국력 신장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알수가 있었다.

유럽, 특히 스위스 같은 나라는 많은 외침과 파동을 겪으면서 여러나라 민족이 모여 국가를 형성하였고 일정한 국어가 없이 5개국어(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로마)를 통용하고 있으면서도

국론이 통일되어 경제부국을 이룩하고 일등 국민이 된 현상을 보면서 단일민족이며 훌륭한 국어가 있고 5천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이 이제는 모든 악순환과 역경을 지혜와 슬기로 극복하고 국론을 모아 통일조국의 대성업을 성취하여 천혜의 명산과 다도해의 절경을 보존하고 살고 다듬어 내국인은 물론 세계적인 이목을 고흥반도로 집중토록 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산수가 수려하고 4계절이 완연하며 항상 맑은 공기, 알맞은 습도와 일광의 값진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흥반도의 전지역을 관광화하는 천년대계의 일환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완성이 되기까지 능력과 실정에 맞게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자율과 낭만 그리고 안정이 보장되는 낙원으로 만들어 만인이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승지가 될 때 관광수입원이 될 것이며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경쟁력의 대처방안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본다.

이는 지구촌 흐름으로 보아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개발과 추진이 병행된다면 차세대에게는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것이며 훌륭한 조상으로 높이 평가될 것임을 확신하며 선진 유럽을 순방하고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느낀바 있어 위와 같이 소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고흥군의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처리하였습니다.

(1,2호에 1회 ~ 15회까지 수록하였음)

□ '91~'93안건 처리상황

회의회수	계	조례안	예산안	청 원	일반안건	비 고
계	201	73	11	4	113	'93년말
'91(7회)	87	29	4	1	53	1회 ~ 7회
'92(8회)	41	25	3		13	7회 ~ 15회
'93(10회)	73	19	4	3	47	16회 ~ 25회

□ '93회기별 처리한 안건

회 기	차 수	부 의 안 건	심의결과
제16회임시회 '93. 1. 16 (1일간)	제 1차 1. 16(토)	1. 도화면과봉래면간해면수계조정을 요한 청원 처리의 건 - '63년과 '73년에 봉래면 지죽과 사양 리하도가 도화면 지죽과 사덕리 하도 로 행정구역 개편시 해면수계 미조정 으로 도화면 어민들 민원제기 - 어업권은 나로도수협으로 행사권은 현행대로 도화면으로 양자 합의	원안가결
제17회임시회 '93. 2. 3 (1일간)	제 1차 2. 3(수)	1. 도양읍소록도정신질환자수용시설건립반 대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 - 천혜의 자연풍경이 빼어난 관광자원 을 보존하고 있는 축복의 땅 소록도 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나환자 치료를 위한 국립소록도병원 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원안가결

회 기	차 수	부 의 안 건	심의결과
		<p>행정구역상 고흥군에 속할뿐 정부로부터 모든 사항을 관장받아 존속해 왔으며, 일반 주민들은 통행의 제한을 받는 등 국가소유 특정지역으로 여기고 살아왔으나, 근대의학의 발달과 치료가 되면서 점차 수용자가 감소하여 가까운 시기에 병원이 폐쇄되면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원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데 각종 매스컴에 나환자 수용지역 90만평의 절반가량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로 상반기중 확정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행정처사에 분노를 느끼며,</p> <p>—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절대불가의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건의서를 채택 중앙요로에 건의하였음.</p>	
제18회임사회 '93. 2. 16 ~ 2. 20 (5일간)	제 1차 2. 16(화) ~ 제 4차 2. 19(금)	<p>1. 군정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p> <p>— '93군정보고 청취후 의문점에 대한 질의</p>	
	제 5차 2. 20(토)	<p>1. 고흥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p> <p>— 청소년 육성법이 청소년 기본법으로 개정</p> <p>— 청소년 위원회 구성원 15인에서 15인 이상 20인 이내</p> <p>2. 고흥군노인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정안</p>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회 기	차 수	부 의 안 건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 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함 <p>3. 고흥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장 직급을 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 보건의료서비스 행정력 강화 <p>4. 취도마을석산개발허가로인한 문제점해 결과연장·신규허가불허요구에 관한 청 원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 회의견서 작성 집행부에 통보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제19회임시회 '93. 4. 7 (1일간)	제 1차 4. 7(수)	<p>1. 의장·부의장선거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대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p>2. 각상임위원장 선거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대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p>3. 각상임위원선임의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대의회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 	<p>의 장 박동래 의원 부의장 김동인 의원 운영위원장 송기복 의원 총무위원장 고임준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신윤식 의원</p>
제20회임시회 '93. 5. 14 ~ 5. 22 (9일간)	제 1차 5. 14(금)	<p>1. 고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효율적 구매와 불용품 매각처 분 년2회 하고, -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 공사감독 공무 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 출납원이 검 수함 <p>2. 고흥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 군세과세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 정안</p>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회 기	차 수	부 의 안 건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세제지원을 하여 농촌유휴 노동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에 기여코자함 <p>3.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3개월전에 특별휴가를 실시하던 것을 별정직(읍면장)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 특별휴가 실시토록 함 <p>4. 고흥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사부 훈령 제666호에 의거 읍면 보건지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폐지하고 보사부의 보건지소 관리 운영 규정 준용토록 함. <p>5. 휴회결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기중 5.15~5.17(3일간) '92하반기 발주사업장 현지 확인 2개조로 편성 운영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제 2차 5. 18(화)	<p>1. 유관기관단체업무현황청취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단위 유관기관단체 업무 현황 청취 	경찰서, 농협군지부, 교육청, 고흥군수협
	제 3차 5. 19(수)	<p>1. 유관기관단체업무현황청취의 건</p>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 한전고흥지점, 농진공사고흥지부 농지개량조합
	제 4차 5. 20(목)	<p>1. '92하반기 사업자체 평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확인 결과에 대한 평가 	

[illegible]

회 기	차 수	부 의 안 건	심의결과
		<p>(현지조사후 처리기로 유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흥 도시광장 조성부지 매입, 도양 녹동2구 도로편입 부지매입, 금산면 대흥리 672-1번지 사유건물 매입의 건 <p>3. 광역상수도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및 토목자금의 차입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암댐 용수 인입으로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는 1992년-2001년까지 10개년 연차사업으로 - 2읍 10개면 84,459명이 수혜를 보게 되며 '93사업계획으로 배수관 31km관리사 1동 14억8천만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남도 지역개발기금 8억8천만원과 토지관리 특별회계 6억을 차입기로 의결 <p>4. 목적세 신설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 (의원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부고속 전철이나 신공항 건설등을 위하여 정부에서 목적세를 신설하게 되면 -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53%가 넘는 우리군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면 존립이 위태롭게 되므로 목적세 신설 철회 촉구를 위하여 결의문 채택 중앙요로에 건의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제22회임시회 '93. 9. 2 (1일간)	제 1차 9. 2(목)	<p>1. '92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원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사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채권및 채무의 결산 및 기금의 결산과 금고의 결산을 위하여 	<p>(원안가결)</p> <p>위원3명 선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태근의원 -김동인의원 -김경주 고흥축협총무계장

회 기	차 수	부 의 안 건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및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검사위원 선임 	
		<p>2. '93지방자치단체정수물품추가배정승인의견 (군수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취득 업무용 정수 8종 49개중 구 내식당 냉·난방기 1대, 재무과 세탁기 1대를 삭감하고, 사업용 정수 5종 7개중 지도소 소형화물차 1대, 환경보호과 굴삭기 1대를 삭감하고 나머지 원안가결 대체취득 업무용 정수 3종 41대중 전자복사기 9대를 삭감하고 나머지 원안가결 	수정가결
		<p>3. 고흥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가 세제혜택으로 응분의 예를 행하므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원안가결
		<p>4. 고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등을 심사키 위하여 법제화 함 	원안가결
		<p>5. 고흥군자치법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원발의)</p>	원안가결

회 기	차 수	부 의 안 건	심의결과
		<p>— 군민의 생활과 직·간접 관련된 조례를 일괄 검토하여 제정·개정·폐지 및 자구수정에 이르기까지 현실에 맞도록 정비코자 특별위원회 구성(34건 적출 심사중)</p> <p>6. 군정 질문의견(의원발의)</p> <p>— 고흥군 직영 서울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실태 및 대서면 정주권 도로사업 부실시공에 따른 경위를 묻고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여 잘못된 사항을 시정코자 함</p>	<p>특별위원 : 송기복의원(위원장) 유태근의원(간사) 신윤식의원 고임준의원 정영표의원</p> <p>질 문 요 지 (별첨) ○ 지적사항 시정토록 군에 건의</p>
제23회임시회 '93. 10. 26 (1일간)	제 1차 10. 26(화)	<p>1. 고흥군민의상시상유보에대한경위보고의견 (의원발의)</p> <p>— 고흥군민의상 조례가 정한바에 따라 군관내 각계각층에서 추천된 10명의 수상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사회복지 부문 1명, 지역개발 부문 1명을 수상자로 심사 제19회 군민의날인 10월16일 시상토록 심사결정 통보하였으나 군민의날이 경과되어도 아무런 통지 없이 시상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위를 묻고 궁금한 부분은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고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시정을 촉구코자 함.</p>	원안가결
제24회임시회 '93. 11. 15 ~ 11. 19 (5일간)	제 1차 11. 15(월)	<p>1. 의정자료수집활동을 위한 휴회결의의 건 (의원발의)</p>	원안가결

회 기	차 수	부 의 안 건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군의회 의원 모두는 2개반으로 편성 11월16일부터 11월19일까지 4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및 읍면을 현지출장, 의정자료를 수집하여 '93년도 정기회 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활용코자 함 	
		<p>2. 고흥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수에게 있었던 화재예방 업무가 상위법인 소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이관토록 '92년11월1일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 폐지 	원안가결
		<p>3. 고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이 포함되고,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할때 평가 요율을 하향조정함과 동시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영세임대자를 보호하고 건물의 부속토지를 제한하여 투기를 방지할 목적임. 	원안가결
		<p>4.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부에서 요구한 취득재산 토지5건 건물1동, 선박 1척과 처분재산(토지1건)중 고흥군 옥하리 145-2번지 기부채납을 위한 건물 취득분은 현지조사후 처리키로 보류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수정의결
		<p>5. 고흥군건축조례제정조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개정과 동법 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범위내에서 지방자 	원안가결

[illegible]

회 기	차 수	부 의 안 건	심의결과
		<p>－ 벼농사는 우리군민의 주된 생계유지 수단이며 추곡수매는 우리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되는데 정부가 확정 발표한 수매량과 수매값은 생산비와 물가상승치를 완전히 무시한 수치라고 인식을 같이한 우리의회 의원들을 만장일치로 채택 건의하였다.</p> <p>4. 휴회결의</p> <p>○11월27일부터 11월28일까지(2일간)휴회</p> <p>－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p> <p>○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3일간)휴회</p> <p>－ '93년도(정기)행정사무감사 실시(상임위원회별)</p> <p>○군정질문서 준비</p>	<p>상임위원회별</p> <p>상임위원회별 소관실과소</p> <p>전 의 원</p>
제 3차 12. 3(금)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93군정추진사항에 대한 질문	질문및답변 요지(별첨)	
제 4차 12. 4(토)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93군정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	〃	
제 5차 12. 6(월)	<p>1. '94고흥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제안설명의 건</p> <p>－ '94년도 고흥군예산안에 대한 제안설 명 청취</p> <p>－ 제안설명 : 군수</p> <p>2.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p> <p>－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별로 감사 실시 결과 16개 항목 지적 집행부에 통보시정 요구</p>	원안가결	

[illegible]

회 기	차 수	부 의 안 건	심의결과
		<p>4. 휴회결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19일(1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정리추경예산안 검토 ○ 12월20일부터 21일까지(2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정리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 12월22일부터 23일까지(2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정리추경예산안 실과소별 제안 설명 -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활동 	<p>전 의 원</p> <p>각 상 임 위 원 회 별</p> <p>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p>
	제 7차 12. 24(금)	<p>1. '93년도제2회고흥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경예산 총규모 379,378만원중 일반회계 293,257만원, 특별회계 86,121만원으로 '93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내시와 주로 인건비 등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p>2. 고흥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단기융자기금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의 변동에 비추어 현재 1세대당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개정 <p>3. 고흥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9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회 기	차 수	부 의 안 건	심의결과
		<p>침에 의하여 지방양여금 사업을 일반 회계로 통폐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본 특별회계 존치 불필요로 폐지</p> <p>4. 고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p> <p>－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라 동 조례상의 공유림 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기하기 위함</p> <p>－ 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 폐지</p> <p>5. 고흥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p> <p>－ 우수 농고생을 실질적으로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특별지원 용자금의 지원액 인상및 대부기간 연장으로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코자 일부개정</p> <p>6. 고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p> <p>－ 고흥군 사무기구의 명칭변경에 따라 동 조례의 간사와 서기의 명칭이 변경됨(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직제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p> <p>7. 고흥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p> <p>－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동 조례제정</p>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회 기	차 수	부 의 안 건	심의결과
		<p>8. 고흥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p> <p>— 부정한 수단으로 상수도 요금을 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명시 상수도 요금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함</p>	원안가결
		<p>9.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p> <p>— 고흥읍 옥하리 145-2번지에 기부채납을 위한 건물 취득건은 현지 확인 결과 공원 부지는 체육시설 설치와 부지정리 및 조경이 완료되었고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건물 부지로는 마땅치 않음</p>	부 결
		<p>10.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p> <p>—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면 어전리 산51-1번지와 6필에 대하여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균유림 대부에 따른 채석허가량 매각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에 능률을 기하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승인</p>	원안가결

위원회 활동 상황

■ 운영위원회

일 시	차 수	출 석 위원수	활 동 내 용
'93. 3. 17(水) 10:30 ~ 11:50	1차	15인	1. 도립공원 지정에 관한 설명 ○ 제한설명 : 도시과장 ○ 원안가결 2. 해창만간척사업 준공기념탑 설치에 따른 설명 ○ 제안설명 : 해창 오마 사업소장 ○ 제3안 가결 3. 대 군정질문은 해외 연수후 실시하기로 협의 4. 각종 자료조사는 적법 절차를 거쳐 실시하기로 협의
'93. 3. 30(火) 10:00 ~ 10:50	1차	14인	1. 초대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시기 및 방법등 협의 ○ 선 거 일 : '93. 4. 7(水)10:00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 2. 개원 2주년 행사계획 협의
'94. 4. 21(水) 10:30 ~ 11:20	1차	4인	1. 제20회 임시회 회기 일정 협의 ○ 일정 : '93. 5. 14~5. 22(9일간)
'95. 5. 29(土) 10:30 ~ 11:00	1차	16인	1. 타 시군의의회 방문 및 선진지 견학 코스 및 일정 협의

일 시	차 수	출 석 위원수	활 동 내 용
'93. 6. 14(月) 10:00 ~ 10:30	1차	16인	1. 제21회 임시회 회기 일정 협의 ○ 일정 : '93. 6. 28~7. 2(5일간) ○ 내용 • 군정질문(2일간) •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승인(3일간) 2. 의원 해외연수 계획 협의 ○ 2개조로 편성 운영
'93. 6. 23(水) 14:00 ~ 15:10	1차	14인	1.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승인에 관한 계획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7명) 2. 대 군정질문에 따른 운영 방법 협의 3. 도청 광양만권 유치를 위한 대 토론회 참석 협의 4. '93년산 추곡수매 현장방문 격려계획 협의
'93. 8. 4(水) 10:30 ~ 12:00	1차	14인	1. 의원(공직자)재산등록에 따른 교육 ○ 설명 : 의사계장 2. 대전엑스포 견학 계획 협의 3. 읍면단위 의정보고회 계획 협의 ○ 기간 : 9월 ~ 10월 4. 제2회 전라남도 농민후계자 대회 준비계획 ○ 제안설명 : 고흥만 사업소장 ○ 원안가결

일 시	차 수	출 석 위원수	활 동 내 용
			5. 정수물품 승인 ○ 제안설명 : 재무과장 ○ 원안가결
'93. 8. 20(金) 10:30 ~ 11:30	1차	8인	1. 제22회 임시회 회기 일정 협의 ○ '93. 9. 2(1일간) 2. 군직영 또는 군지원 서울직판장 실태 파악 협의 ○ 기 간 : '93. 8. 23~8. 27(5일간) ○ 참여의원 : 4명 3. 공직자 윤리위원 및 결산검사위원 위촉 대상 의원 추천 협의
'93. 9. 6(月) 10:00 ~ 10:40	1차	16인	1. 의회 활성화 방안 협의 2. 도양읍 녹동시장 운영실태조사 계획 ○ 조사자 : 박동래, 유택근의원
'93. 9. 13(月) 10:00 ~ 10:50	1차	16인	1. 제19회 군민의날 수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협의 2. '92 세입·세출 결산검사 계획 설명 3. '93 태풍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 청취 ○ 설명 : 건설과장, 수산과장

일 시	차 수	출 석 위원수	활 동 내 용
'93. 9. 27(月) 10:00 ~ 10:30	1차	16인	1. 제19회 군민의날 수상후보자 심사에 따른 협의 2. 진정서 처리방안 협의(포두 익금) ○ 산업, 건설위원회 이송
'93. 10. 4(月) 10:00 ~ 10:50	1차	11인	1. 대전엑스포 .견학 일정 협의 ○ 일정 : '93. 10. 19~10. 20(2일간) 2. 재경향우회 체육대회 참석 협의 3. 공직자 재산공개목록 윤리위원회에 이송 협의
'93. 10. 18(月) 10:00 ~ 10:40	1차	16인	1.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협의 2. 제23회 임시회 회기 일정 협의 ○ 일정 : '93. 10. 26(1일간) 3. 제19회 군민의상 유보사유 청취 ○ 설명 : 부군수, 내무과장
'93. 10. 25(月) 10:30 ~ 11:00	1차	14인	1. 제23회 임시회에 관한 대책 협의 ○ 군민의상 유보에 관한 사항
'93. 11. 1(月) 10:00 ~ 10:30	1차	16인	1. '93 정기회 감사자료 요구사항 협의 ○ 상임위원회별로 자료 확정 2. 제24회 임시회 일정 협의 3. 당면 의정 협의

일 시	차 수	출 석 위원수	활 동 내 용
'93. 11. 8(月) 10:00 ~ 10:50	1차	16인	1. 군의회 운영계획 검토 2. 전남 동부지역 의원세미나 참석계획 협의 3. 감사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활동 계획 협의(2개반 편성, 기간 : 11. 10~11. 19) 4. 제3차 공직자 윤리위원회 의결사항 주지
'93. 11. 22(月) 10:00 ~ 11:40	1차	12인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제안자 선정 2. 제25회 정기회 의사일정 검토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4. 평통 교육 참석에 관한 협의 5. 농어촌 발전심의회 위촉위원 협의
'93. 12. 1(水) 14:00 ~ 14:40	1차	5인	1. 정기회 행정감사 실시 ○ 대상 : 의회사무과

총무위원회

일시	차수	출석 위원수	활동내용
'93. 2. 19(金) 10:00 ~ 12:00	1차	7명	1. 조례 3건 심사(원안가결) ○ 고흥군청소년운영조례개정조례안 ○ 고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 고흥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3. 3. 17(水) 14:00 ~ 17:00	1차	6명	1. 고흥 가축시장 부지를 5일시장부지로 매입하여 주 도록한 청원심사(1차) ○ 청 원 인 : 고흥읍 남계리 신익재외 1,976명 ○ 소개의원 : 이경수 의원 ○ 현지답사 : 인근지역 주민과 다른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후 처리하기로 연기
'93. 3. 23(火) 10:00 ~ 12:00	1차	7명	1. 고흥 가축시장 부지 매입에 따른 청원서 심사(2차) ○ 도시계획상 시장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과 현 가 축시장 현황 파악 현지 확인 ○ 가축시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회 부

일 시	차 수	출 석 위원수	활 동 내 용
'93. 5. 14(金) 10:00 ~ 16:00	1차	7명	<p>1. 조례 4건중 개정 3건과 폐지 1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고흥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 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고흥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93. 6. 23(水) 15:00 ~ 17:00	1차	6명	<p>1. '9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설명 : 재무과장 ○ 검토보고 : 전문위원 ○ 의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설묘지조성편입부지의건, 고흥쓰레기위생매 립장부지의건, 공설운동장편입부지의건, 금산 면과 동강면의 청사부지매입의건, 동강면, 남 양면, 도양읍의 청사, 부속사, 창고, 민원실 증 축의건 • 현지조사후 처리하기로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흥도시광장조성부지매입의건, 도양녹동2구 도로편입지부지매입의건, 금산면 대흥리 672 -1번지내 사유건물 매입의건

일 시	차 수	출 석 위원수	활 동 내 용
'93. 6. 28(月) 13:00 ~ 19:00	1차	7명	1.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추가 배정의건 ○ 제안설명 : 재무과장 ○ 검토보고 : 전문위원 ○ 적정수 검토후에 처리하기로 부결 2.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류분 심사 ○ 도양 녹동2구 도로 편입부지 매입의 건과 금산 면 대흥리 672-1번지내 사유건물 매입의 건은 원안의결 3. '9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제안설명 : 해당 실과소장 ○ 목별로 내용검토
'93. 6. 29(火) 10:00 ~ 18:00	2차	7명	1. '9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내용 검토
'93. 6. 30(水) 10:00 ~ 20:00	3차	7명	1. '9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실과소별 계수조정 (38,342천원 삭감조정)
'93. 8. 28(土) 10:00 ~ 12:00	1차	7명	1.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추가 배정의 건 ○ 제안설명 : 재무과장 ○ 검토보고 : 전문위원 ○ 의결내용 : 구내식당 냉, 난방기 1대 세탁기 1대,

일 시	차 수	출 석 위원수	활 동 내 용
			<p>소형화물차 1대, 굴삭기1대, 전자복사기 9대를 제외한 나머지 원안의결</p> <p>2. 조례 2건 원안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흥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 고흥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 고흥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건 <p>3. 고흥군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발의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5명 내외 ○ 내용 : 정비 특위를 구성하여 고흥군 조례중 개정, 폐지, 제정사항을 발췌 정비 목적
'93. 9. 13(月) 10:00 ~ 13:00	1차	7명	<p>1. 군정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 발췌 관계 실과장으로 부터 추진사항 설명자료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 료 : 7건 ○ 설명일시 : '93. 9. 21. 10:00
'93. 9. 21(火) 13:30 ~ 20:00	1차	7명	<p>1. 군정업무 추진사항 설명 청취 및 질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별 청소차량 관리 운영사항 <p style="text-align: right;">— 환경보호과장—</p>

일 시	차 수	출 석 위원수	활 동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로및 농어촌도로 이전등기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진흥과장 ○ 새마을사업 추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진흥과장 ○ 군 전입시험 및 승진서열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무 과 장 ○ 구내식당 운영과 임대료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무 과 장 ○ '93년도 군발주 용역사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 무 과 장 ○ '93년도 수의계약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 무 과 장
'93. 11. 13(土) 10:00 ~ 12:00	1차	5명	<p>1. 조례중 개정조례 1건과 폐지조례 1건에 대하여 원 안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고흥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p>2.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설명 : 재무과장 ○ 검토보고 : 전문위원 ○ 의결내용 : 고흥읍 옥하리 145-2번지 <p style="text-align: right;">기부채납을 위한 건물취득분은 현지 조사후 처리하기로 보류하고 토지 5 건, 선박 1척 취득과 토지 1건 매각 은 원안의결</p>

일 시	차 수	출 석 위원수	활 동 내 용
'93. 11. 26(金) 14:00 ~ 18:00	1차	6명	1.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 내용검토
'93. 11. 27(土) 10:00 ~ 13:00	2차	6명	1. '9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 결과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중에는 당해년 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도 이월 하는 사례 지적
'93. 11. 29(月) 10:00 ~ 18:00	1차	7명	1. '93년도 행정사무 정기감사 ○ 관계서류 검토
'93.11.30(火) 10:00 ~ 18:00	2차	7명	1. '93년도 행정사무 정기감사 ○ 자료제출 소홀외 11건 지적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
'93. 12. 7(火) 10:00 ~ 18:00	1차	7명	1.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 실과소장으로 부터 설명 청취 및 내용 검토
'93. 12. 8(水) 10:00 ~ 17:00	2차	7명	1.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 실과소장으로 부터 설명 청취 및 내용 검토

일 시	차 수	출 석 위원수	활 동 내 용
'93. 12. 9(木) 10:00 ~ 18:00	3차	7명	1.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 실과소장으로 부터 내용 설명 청취
'93. 12. 10(金) 10:00 ~ 17:00	4차	7명	1.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 목별 실과수별 내용 검토 계수조정
'93. 12. 11(土) 10:00 ~ 13:00	5차	7명	1.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 기획실외 10개 실과(총무위원회 소관)에 757, 251천원 감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
'93. 12. 20(月) 10:00 ~ 17:00	1차	7명	1. '9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 실과소장으로 부터 내용 청취및 검토
'93. 12. 21(火) 10:00 ~ 18:00	2차	7명	1. '9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 계수조정한 결과 3,000천원 감과 2,000천원을 증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 2. 조례 5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 ○ 고흥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고흥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고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고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일 시	차 수	출 석 위원수	활 동 내 용
			<p>○ 고흥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p> <p>3. '93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보류('93. 11. 13보류)한 고흥읍 옥하리 145-2번지에 기부채납을 위한 건물 기부채납건은 현지확인 결과 현지 실정에 건물을 신축하기에 맞지 않아 부결</p>
'93. 12. 23(木) 10:00 ~ 13:00	1차	7명	<p>1. '93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예비 심사</p> <p>○ 제안설명 : 기획실장</p> <p>○ 원안의결</p>

산업·건설 위원회

일시	차수	출석 위원수	활동내용
'93. 1. 29(金) 14:00 ~ 15:30	1차	7인	<div>□. 포두면 취도마을 석산개발 허가로 인한 문제점 해결과 연장 신규허가 불허 요구에 관한 청원심사</div> <div>○ 청원인 :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취도 정문길외 226명</div> <div>○ 소개의원 : 류준상 의원</div> <div>○ 검토보고 : 전문위원</div> <div>○ 본회의에 부의기로 의결</div>
'93. 6. 28(月) 14:00~ 6. 29(火) ~ 16:00	1차	5인	<div>□.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및 토 특자금 차입</div> <div>○ 제안설명 : 도시과장</div> <div>○ 검토보고 : 전문위원</div> <div>○ 원안 가결</div> <div>□. '9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div> <div>○ 제안설명 : 산업과장, 건설과장 수산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해창오마사업소장, 지도소 지도과장, 고흥지구간척사업소 관리과장</div>

일 시	차 수	출 석 위원수	활 동 내 용
	2차	7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 삭감액 : 829,100 천원 ○ 증 액 : 255,500 천원
'93. 8. 28(土) 10:00 ~ 11:30	1차	7인	<p>□. 동강면 소재지 직행버스 정류 청원 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 원 자 : 동강면 노동리 658번지 신용식의 9인 ○ 소개의원 : 송기복 의원 ○ 검토보고 : 전문위원 ○ 본회의 부의치 아니하기로 의결
'93. 9. 6(月) 10:00 ~ 16:00	1차	7인	<p>□. 당면 현안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면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직판장 운영 • 대서면 정주권 도로사업 • 차기 상임위원회 개최 ○ 농산물 직판장 운영과 대서면 정주권 도로사업 은 제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및 질문을 하 였던 사항임으로 추후 심의 ○ 폭우(8.20~8.21)피해 복구상황 보고토록 집행 부에 요구키로 의결

일 시	차 수	출 석 위원수	활 동 내 용
'93. 9. 13(月) 10:00 ~ 12:00	1차	16인	☐ . 폭우피해 및 복구계획 ○ 보고자 : 건설과장, 수산과 어로계장 ○ 폭우피해 상황을 읍면별, 피해별, 농가별로 작성 제출요 ○ 현지 확인반 편성 운영
'93. 9. 20(月) 10:35 ~ 20:00	1차	4인	☐ . 폭우피해 현지확인 ○ 확인지역 : 고흥읍, 풍양면, 도양읍 ○ 확인방법 : 전수 확인은 생략하고 피해가 극심한 지역만 답사
'93. 11. 13(土) 10:15 ~ 12:00	1차	4인	☐ . 고흥군 건축 조례 심사 ○ 제안설명 : 도시과장 ○ 검토보고 : 전문위원 ○ 원안가결
'93. 11. 26(金) 14:00 ~ 18:00	1차	7인	☐ .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 제안설명 : 재무과장 ○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서류확인
'93. 11. 27(土) ~13:00	2차	7인	○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류확인

일 시	차 수	출 석 위원수	활 동 내 용
'93. 11. 29(月) 10:00~ 12. 1(水) ~11:30	1차	7인	□.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대상실과 :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 감사제출서류보고 및 질의 답변
	2차	7인	○ 대상실과 : 건설과, 도시과, 해창오마사업소, 고흥지구간척사업소 ○ 감사제출서류보고 및 질의 답변
	3차	7인	○ 대상실과 : 농촌지도소 ○ 감사제출서류보고 및 질의 답변
'93. 12. 7(火) 10:00~ 12. 11(土) ~ 13:00	1차	7인	□. '94년도 예산(안)예비심사 ○ 대상실과 : 건설과,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 ○ 제안설명 : 주무과장
	2차	7인	○ 대상실과 : 산림과, 수산과, 도시과 ○ 제안설명 : 주무과장
	3차	7인	○ 대상실과 : 해창오마사업소, 고흥지구간척사업소, 산업과 ○ 제안설명 : 주무과장

일 시	차 수	출 석 위원수	활 동 내 용
	4차	7인	○ '94년도 예산(안)예비심사 계수조정
	5차	7인	○ '94년도 예산(안)예비심사 계수확정 ○ 삭감액 : 551,228천원
'93. 12. 20(月) 10:00 ~ 17:00	1차	7인	□. '93 정리추경(안)심사 ○ 증액 : 36,218천원 ○ 감액 : 123,211천원
'93. 12. 21(火) 10:00 ~ 15:00	1차	4인	□. 조례안 의결 ○ 원안가결 • 고흥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고흥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유 보 •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3. 12. 23(木) 14:00 ~ 16:00	1차	5인	□. '9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견 심사 ○ 제안설명 : 산림과장 ○ 검토보고 : 전문위원 ○ 원안가결

■ 특별위원회

□. 고흥군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 목 적 : 시행중에 있는 자치법규(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또는 주민에게 필요이상 불편을 주는 조항을 적출하여 절차에 의거 제정, 개정, 폐지등으로 정비코자 함.
- 활동기간 : '93. 9. 2~
- 구 성 :
 - 위원장 송 기 복 • 간 사 유 택 근
 - 위 원 신윤식, 고임준, 정영표 의원
- 활동사항
 - 내용중 현실과 불부합한 조항 34건 적출
 - 집행부 관련 실과와 내용 검토등 협의 완료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
 - 특별위원회심의를 거쳐 임시회시 안건 처리계획

□.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 목 적 :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 활동기간 : '93. 6. 28~7. 3 (6일간)
- 구 성 : 7명
 - 위원장 최 형 문
 - 위 원 유택근, 김남규, 박채주, 류준상, 송용현, 정영표의원
- 활동사항
 -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1,560,138천원(일반 △ 291,721 특별 1,832,083)을

심사의결

※ 예산총액 94,370,272천원(일반 64,703,495 특별 27,813,918)

□. '93 정기회 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목 적

-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정리추경)
-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 활동기간 : '93. 11. 25 ~ 12. 24

○ 구 성

- 위원장 송 복 조 • 간 사 류 준 상
- 위 원 유탉근, 김동인, 박채주, 송기복, 정영표 의원

○ 활동사항

- '94년 예산요구액 96,105,173천원 (일반 78,064,996 특별 18,040,177)
심사 의결
- '93년 제2회 추경요구액 3,793,780천원(일반 2,932,570 특별 861,210)
심사 의결

※ 예산총액 98,164,052천원 (일반 67,636,065 특별 30,527,987)

- '92년 세입·세출결산 : 금고 감사 소홀등 7건 시정 건의



의정활동의

이 모 저 모

◇ 선진 고품 건설을 위한 캠페인 전개

고흥군의회에서는 '93. 1. 16도양읍 녹동을 시발점으로 하여

- 양담배 추방
- 에너지 절약
-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각 업소 방문 스티카를 부착하였으며 거리에서는 홍보 전단 배부 그리고 가두방송을 실시하여 온 군민이 동참하여 실천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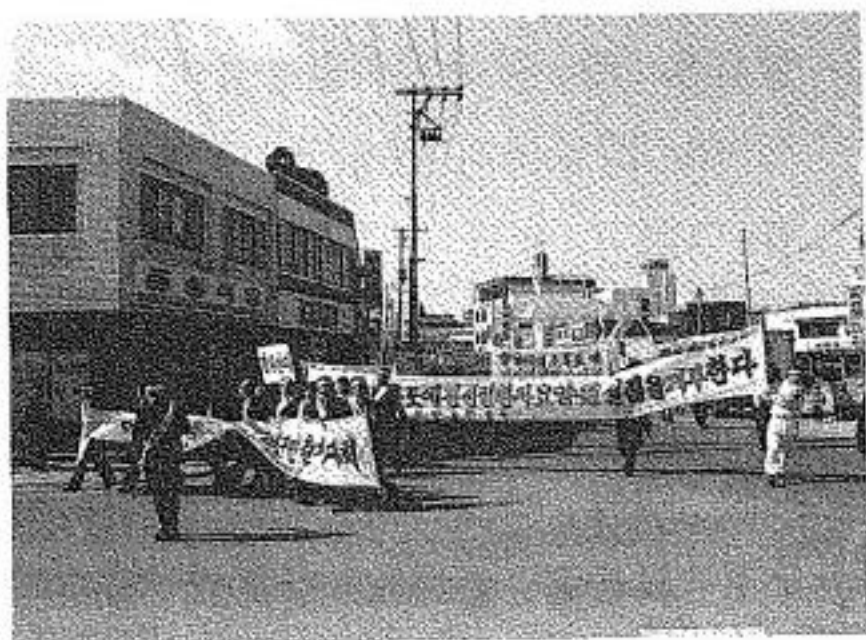
◇ 불우 이웃 초청 위안회

'93. 1. 20 고품군의회에서는 관내 불우 이웃 15명(소년소녀 가장 6명, 모

자 가장 9명)을 의회로 초청하여 고급 이불 1점, 앨범 1점, 금일봉등 1인 75천원 상당과 중식을 제공하여 위로 격려함으로써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 정신질환자 수용 시설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 구성 및 범군민 쫓기대회 개최

고흥군의회가 주최가 되어 관내 소록도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반대를 위한 범군민 대책위원회(관내 각급 사회단체장)를 구성하고, '93. 2. 9녹동 물양장에서 전의원 및 군관내 사회단체장 그리고 군민 2천여명이 참여하여 쫓기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땀심 높이기를 위한 퇴비증산 독려

본군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퇴비증산을 위하여 '93. 8. 10-8. 30일까지 관내 전역을 순회하면서 격려금등을 전달하는등 풀베기 붐조성에 일조하였다.



◇ 서울 농산물 직판장 운영 실태 파악 및 격려 방문

본군 의회 부의장 김동인 의원을 단장으로 한 각상임위원장들이 '93. 8. 23-8. 27일까지 우리군 직영 및 농협 그리고 농민 후계자 직영 직판장을 방문 격려한후 직판장 운영실태 및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제22회 임시회를 개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 질문을 통하여 잘못된 점들을

시정토록 촉구하였다.



◇ '93년도 정기회 대비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 조사

본군 의회에서는 '93. 11. 10-11. 18일까지 2개조를 편성 전읍면 행정분야 및 군읍면 시행 각종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93 정기회시 행정 사무감사 및 군정 질문 자료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부추곡수매 “안”에 대한 고흥군의회 성명 발표

지난해 11월 26일 제25회 정기회 2차 본회의시 3%인상 900만섬 수매 “안”에 대한 우리 의회의 입장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농업에는 경쟁력을, 농촌에는 활력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을 촉구한바 있다.

정부추곡수매 “안”에 대한 고흥군의회 입장

고 고흥군은 절대다수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벼농사는 우리군의 주된 생계유지 수단이며 추곡수매는 고흥군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정부가 확정된 수매량과 수매값은 생산비와 물가상승치를 완전히 무시한 수치이며 농촌 현실은 물론 경제적 여건 및 상황에도 부합되지 않고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는 농정이 이농의 현상을 부추키는 국정으로 바뀌고 있다.

13년만의 냉해로 인한 추곡생산량 감소로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특수한 현실임에도 작년도 인상률 6%의 절반수준인 3%라고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신농정의 위선과 기만적인 정책임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7만 6천 농민을 대표하는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3%인상과 9백만 섬 수매는 농민의 고통을 외면, 농촌을 폐허화 한다고 보아 식량안보 및 지역경제 유지 발전 차원에서 제25회 정기회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 정부는 농업이 국가안보의 기본이자, 최후의 받침대라는 사실을 인식

하고 추곡수매가 16%인상과 수매량 1천 2백만섬이상 수매하라.

둘째 :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는 농민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려 함께사는 길을 찾아야하고 정부는 물가안정과 재정사정 등 정부입장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농민의 처지도 고려하라.

셋째 : 농민이 생존권을 걸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처절한 현실에서 개혁을 앞세우고 있는 문민정부는 흥정하는 구태를 과감히 벗고 농업에는 경쟁력을, 농촌에는 활력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획기적 대책을 촉구한다.

1993. 11. 26

고 흥 군 의 회 의 원 일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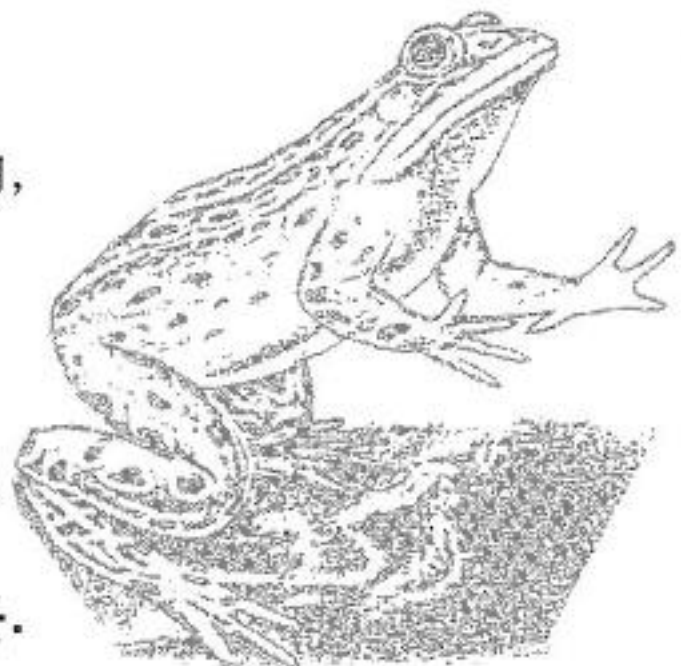
“우물밖 개구리”

우리모두 힘모아 세계로, 미래로!

우물안 개구리는 좁은 하늘과 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합니다.
우리도 어두운 역사와 부족한 자원을
운명으로 체념해 버리면 우물안 개구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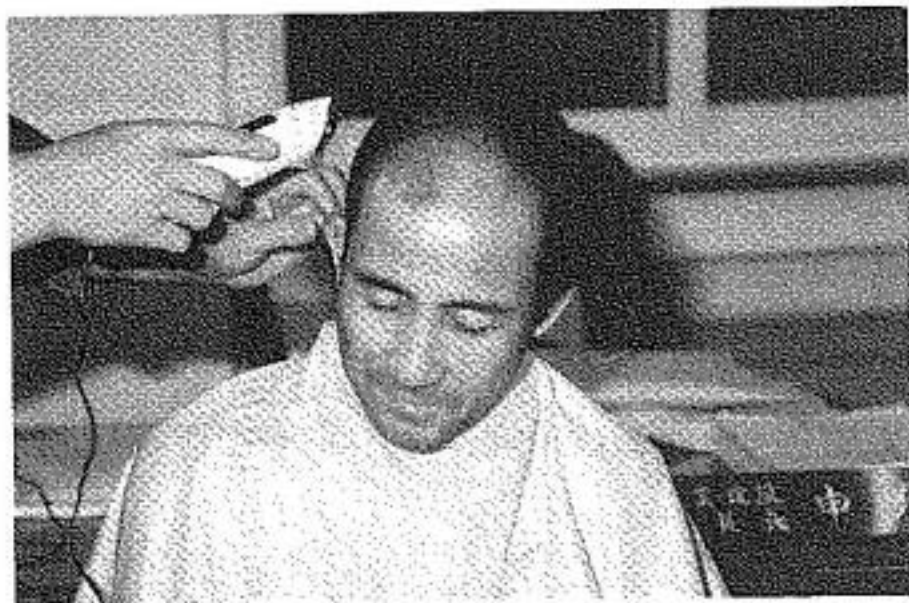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물밖 개구리는 변화하는 환경을 극복하며,
세계로 향해 뛰니다.
우리 모두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시야를 넓히고 더 멀리 뛰어야 합니다.
변화는 고통이 아니고 발전하며,
즐거움입니다.

우리 모두 우물밖 개구리가 됩시다.



쌀 수입개방 반대 삭발 단식투쟁

고흥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신윤식의원(도덕)은 지난 12월 9일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하여 농민이 생존권을 걸고 아우성치고 있는 처절한 현실을 직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쌀 수입 방침을 즉시 철회할 것을 천명하고 본 방침 철회시까지 군민과 연대하여 저지 투쟁을 해 나가고자 삭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쌀수입개방 반대 결의대회 개최

쌀 수입개방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운 시기에 즈음하여 우리군 7만 6천 농민을 대표하여 결의대회를 갖기로 고흥군의회 제25회 정기 회의에서 의결

- 일 시 : '93. 12. 10 17:00
- 장 소 : 고흥군의회 본회의장
- 참 석 : 고흥군의회 의원 16명,
언론인, 주민
- 내 용 : 쌀 수입 결사반대
결의문 채택



결 의 문

우 리 민족의 주식이며 농촌수입의 4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쌀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의하여 수입 개방을 허용하게 되어, 5백 70만 농민과 농촌의 존립이 기로에 서 있어 농민을 대변하고 농촌을 보호하고자 의원 전체 뜻을 모아 결연한 의지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여 오다가, 올 년 말 안에 타결을 짓는다는 방침 아래 110여국 가트회원 간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설득력 있는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의 처지와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영세민 농민과 생산력이 뒤떨어지는 농업 실태를 이해시키고 유리한 조건을 얻어야 함에도, 국제적인 대세에 밀린 지금에야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강대국의 거센 압박과 힘에 뒤져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협상 막바지에 처하여 있다.

NTC 15개 품목 수입 개방은 집단적이고 기계화된 외국의 농업에 경쟁력을 상실하여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고 농업을 포기하게 만든다.

그래서 식량 안보화 문제와 고유 생활보호에 입각하여 농산물 개방은 제고되어야 하며, 우리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방안으로도 농산물 개방은 절대로 불허하여야 하겠다.

정부에서는 쌀수입 개방이 불수용 되도록, 긴급 처방을 갖고 협상을 처리하기 바라며, 농촌 발전의 획기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촉구하면서 농민의 생존권 보호와 농업진흥을 위하여 고흥군의회 16명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

1. 우리는 정부가 '93년 7월에 발표된 신농정 5개년 계획을 수정하여 근본적

이고 구체적인 농업 계획을 세워,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도록 촉구한다.

1. 우리는 농촌을 황폐화 시키고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쌀수입 개방 정부안을 즉각 철회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농민의 뜻에 부응하여 쌀수입 개방을 결사 반대한다.
1. 우리는 자주성을 수호하고 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쌀수입 개방을 절대 반대하며, 농민의 아픔과 시련을 함께하여 농촌 부흥에 앞장선다.
1. 우리는 농민을 대표하여 쌀수입 개방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노력한다.

1993. 12. 10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議會用語解説

■ 定足數

○ 義事定足數

의회를 開議하거나 어떤사항을 의결할때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의원수로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 의한다.(自治法 55條)

○ 議決定足數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의결 안건 따라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自治法 56條)

◇ 의정보고회 개최

의정활동을 통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주민이 모인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정에 따라 읍면회의실 또는 전 마을을 순회하면서 실시한 의정보고회에서는, 주민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등 적은 소리도 크게 들으며 지역의 제반 실정을 군정에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94년도 군예산 961억 확정

일반회계 781억, 특별회계 180억

제25회 정기회에서 고흥군의 '94년도 예산 961억원을 확정 승인하였다.

- '93. 12. 6일 제2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94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군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 12. 7~12. 11일까지 5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별 세부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예비심사를 거쳐,
- 12. 12~12. 17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복조 의원의 6명)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 12.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일반회계 78,064,996천원과 특별회계 18,040,177천원, 총 96,105,173천원을 의결 확정하였다.

▣ 예산심의 역점 사항으로는,

- 불요불급한 사항이 관례대로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 경상적 경비의 계상은 적정하며 과다계상 여부?
- 물가상승을 이유로 맹목적인 단가 인상 계상 부분은 없는지?
- 보조금 지원사업의 적정여부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한 각종 자료를 근거로 심사숙고한 심의결과, 1,042,222천원을 삭감하여 UR협상에 따른 농어촌 기반시설을 비롯, 주민이 원하는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에 조정 계상토록 의결하였다.

회계별 구성 규모 (단위 : 천원)

○ 세입분야

일반회계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계		78,064,996	100
지 방 세		5,563,000	7.1
세 외 수 입		2,955,311	3.8
지 방 교 부 세		33,439,000	42.8
지 방 양 여 금		8,320,700	10.7
보 조 금	소 계	27,566,985	35.3
	국 비	19,322,336	
	도 비	8,244,649	
지 방 채		220,000	0.3

특별회계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계		18,040,177	100
세 외 수 입		13,713,057	76.0
보 조 금	소 계	2,577,120	14.3
	국 비	2,050,732	
	도 비	526,388	
지 방 채		1,750,000	9.7

○ 세출분야

일반회계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계		79,064,996	100
의 회 비		520,348	0.7
일 반 행 정 비		22,825,490	29.2
사 회 복 지 비		7,889,672	10.1
산 업 경 제 비		27,247,364	34.9
지 역 개 발 비		17,407,329	22.3
문 화 및 체 육 비		799,638	1.0
민 방 위		228,023	0.3
지 원 및 기 타 경 비		1,147,132	1.5

특별회계

회 계 별	예 산 액	구 성 비
계	18,040,177	100
상 수 도 사 업	3,236,713	18.0
주 택 사 업	1,210,027	6.7
의 료 보 호 기 금	2,582,120	14.3
새 마을 소 득 사 업	223,350	1.2
영 세 민 생 활 안 정 자 금	63,740	0.4
해 창 · 오 마 간 척 사 업	612,690	3.6
농 공 지 구 조 성 사 업	113,937	0.6
고 흥 지 구 간 척 사 업	9,997,600	55.4

西紀1993年(檀紀4326年) 4月 8日 木曜日 1版 (日刊)

光州日報

○...檀國市의 韓人 移住 200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檀國市 韓人 移住 200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檀國市 韓人 移住 200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檀國市의 韓人 移住 200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檀國市 韓人 移住 200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檀國市 韓人 移住 200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日 (日刊)

燕等日報

檀國市의 韓人 移住 200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檀國市 韓人 移住 200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檀國市 韓人 移住 200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의원들 쌀개방

○...檀國市의 韓人 移住 200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檀國市 韓人 移住 200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檀國市 韓人 移住 200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西紀 1993年(檀紀 4326年) 1月 20日

全南日報

檀國市의 韓人 移住 200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檀國市 韓人 移住 200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檀國市 韓人 移住 200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光州每日

西紀4326年) 4月 9日



檀國市의 韓人 移住 200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檀國市 韓人 移住 200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檀國市 韓人 移住 200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癩患者 수용 80년...이번엔 精神病원이라나...”

小島島 돌려달라

【鹿洞=朱悟中 기자】나환자수의 감소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됨에 한 것 부름이 있던 高興郡民들은 최

근 보사부의 국 립 小島島 병원 내 국립요양원 건립발표에 반발, 적극적인 대응등에 나서고 있다.

西紀 1993

全南

聞

(日刊)

高興郡民 反對 “한포스”

高興郡民들은 小島島 병원 건립발표에 반발, 적극적인 대응등에 나서고 있다. 高興郡民들은 小島島 병원 건립발표에 반발, 적극적인 대응등에 나서고 있다. 高興郡民들은 小島島 병원 건립발표에 반발, 적극적인 대응등에 나서고 있다.



他地域제품 더 많아... 高興郡民들은 小島島 병원 건립발표에 반발, 적극적인 대응등에 나서고 있다.

高興郡民들은 小島島 병원 건립발표에 반발, 적극적인 대응등에 나서고 있다. 高興郡民들은 小島島 병원 건립발표에 반발, 적극적인 대응등에 나서고 있다.

전날 일

西紀 1993年 12月 10日

金曜日

11

高興郡의회

보의이서우의

西紀1993年(曆紀4326年)

1月 22日

金曜

(日刊)

無等日報

단행

○...[기사 내용]

광주

○...[기사 내용]

광주

○...[기사 내용]

西紀 1993年 2月5日 金曜日 (陰曆 癸酉 1月 14日) 3年 2月 4日 木曜日 (20)

小鹿島정신병원계획 철회 촉구

汎郡民대책위 구성

【鹿洞=중계기자】小鹿島 정신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다.小鹿島 주민들은小鹿島 정신병원에 대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小鹿島 주민들은小鹿島 정신병원에 대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

○...[기사 내용]

광주

○...[기사 내용]

광주

○...[기사 내용]

의 회 에 바 랐 다

소외당하는 주민들에게 따뜻함이 스며드는 사랑을

재경고흥군향우회장 이 영 호

먼저 고흥군의회 박동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의 희생적 봉사정신에 경의를 표한다.

지난 선거때 고향 발전을 다짐하던 이들이 고향을 지키고 있는 우리 보모형제들을 따뜻히 보살피고, 고통을 이겨 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방자치 행정은 관치 행정에서 민치행정, 민의 행정의 실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민 자치의 원리에 의해 주민의 의사가 가장 빨리 가장 바르게 반영될 수 있음을 뜻한다.

자치의 원리는 자기 수용의 원리인 셈이다. 수용은 자기 발전을 뜻한다. 그러므로 자치 행정은 자기 발전의 행정인 셈이다.

고흥군 의회가 전래의 인습을 깨치고 일부 만연되어 온 권위주의, 무사안일, 나태, 적당주의에 젖어 주민들의 고통을 달래 주는데 미흡했던 행정 풍토에 경종을 울려 왔음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지방자치 실시 4년째를 맞는 이 시점에서 기대가 남다른 이런 이유에서다.

첫째, 소외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복지행정에 힘쓸 것을 권고하고 싶다.

그렇다고 눈앞의 개발 이익만을 노리고 환경 영향 평가를 외면하는 등의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건강한 복지 행정은 영구적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여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이는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지방 정부의 수입이 늘어날 때 가능하겠지만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가. 중복 투자는 없는가. 세출의 큰 부분을 점하는 과도한 인건비의 불합리, 기타 경비 절감 부분은 없는가 등 꾸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나의 제언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박 관 년

얼마 전 TV토론에서 이런 대답 내용을 들었던 적이 있다.

이데올로기적 대립에서 경제 전쟁시대에 대비하여 대통령도 국가 사업에 비즈니스의 총사령관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횃수로는 21세기를 근년앞두고는 있는 지금, 세계적 사로 보면 이미 새로운 세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고 있다.

국가를 하나의 기업군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우리 고흥도 이제는 새롭게 깨어나야 한다.

지방자치제의 최소단위가 군이고 보면 각 지역권으로 나누어 선출된 도의원 보다는 군의원들께 기대하는 바가 더 클 것으로 보여진다.

기대하는 바가 크다보니 다소 실망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작금에 의원들의 행보를 보면 소속 읍면에 도로포장, 하수구 뚫기, 마을회관 짓기 등에 너무 연연하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선거구민의 바램을 접어버릴수는 없으나, “미천한 제가 생각하건데 그보다 앞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고흥을 하나의 기업군으로 만들어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을 꾀함이 옳지 않는가 본다.”

우리 고장은 농수산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우선 우리고흥의 특산품으로 되어 있는 유자를 보자.

농민이 생산하여 유통하는데까지 그 동안 지원하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전국 아니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고흥의 과일인 유자가 최고품이 될수 있도록 생산지도와 유통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김도 그렇다, 일본 시장에 다시 수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대학연구팀에 용역을 주어 좀 더 맛있는 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열거치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

UR에 대비하여 타 군보다 앞서가는 항상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고흥의 상징인 팔영산,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등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훼손되어지는 것보다는 자연적인 관광자원의 보존적가치를 충분히 살려 아름다운 고흥이 대외적으로 크게 알려지기를 바란다.

또한 녹동에서 제주를 잇는 카훼리호가 곧 취향을 앞두고 있다.

지나가는 정거장 정도가 아닌 관광의 연계성을 갖고 소득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군을 하나의 기업군으로 경영적 차원에서 생각해 주길 바란다.

“관계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는데”라는 생각보다는 군민의 힘으로 뽑아드린 의원님들이기에 권한도 크고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한 의무도 있다고 본다.

앞서가는 고흥 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가일층 고생해 달라는 부탁을 드려본다.

오늘하루 “고맙습니다”라는 말 몇번 하셨습니까?

고마움을 나타내는 일에 인색하지 마세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아무리 작은 친절이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잊지마세요
감사의 표현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서로 돕는 일에도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하루에 수십번 수백번씩 말해보세요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사회를 한결 따뜻하고 훈훈하게 만듭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

“고흥군의회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행정에 대한 공개와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 지면관계상 '93년도에 실시한 내용 중 일부만 소개합니다. —



의원 이 경 수

질문

효율적인 예산운용 대책 ?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은 삼척 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군 '92년도 일반회계 650억원의 회계년도 말까지의 순 이자액은 23,800만원이다.

그러나 해남군의 '92년도 일반회계 560억원에 대한 순 이자액이 57,000만

원으로, 어림잡아서 우리군과 순이자액의 차이는 약4억원이라는 큰 경제적 손실이 왔다고 볼진데 군 살림을 감시 감독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된다.

각종 투자사업에 있어서 예산 회계법상 신고만 하고 착공하기전에 50%의 선금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내돈이 아니니까 알맞는 선에서 그냥 내주고, 어떤 현장은 착공전 50%전도되고, 어떤 현장은 1~20%에 불과하고, 어떤 현장은 공정이 50%가 넘어도 단 십원한장 전도된 사실이 없

는 자유자재로 돈이 지출되는 이런 현상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야 될런지등 효율적 예산 운영이 되지 못한 점은 무슨 이유인지?

(제21호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답변

고흥군과 해남군은 예산면으로나 군세가 비슷한데 이자 수입이 왜 적으나 하는 것은 우리군의 경우 농지 기금이 23억이 들어와 농지 기금에서 생기는 870만원의 이자는 농업진흥공사로 별도로 귀속이 됨으로 해서 순 세입에 계상이 되지 못하고 해남군의 경우 모든 사업이 상반기 발주를 안하고 늦게 하반기에 발주하고 상반기에 수입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비 집행이 거의 안되는 등 하반기 편중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수입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며, 그 반면에 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이 지연 지불되어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운영상 또는 자금 관리상으로 볼때 이자 수입이 꼭 많이

오른 것만이 자금 관리나 재정 운영이 잘되었다라고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며,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이자율이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인해서 6월말 현재 약 9,500만원의 이자 수입이 되었으나 앞으로 자금관리에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음.

준공 검사전에는 공사비를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나 예산회계법 8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또 공사기간이 60일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급자의 신청이 있을때에는 20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선급금을 지급한것임.
(재무과장 김병욱)

질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대책?

군 관내 산재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살펴보면 대단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소홀히하여 군재정 수입에 막대한 지장

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을 재정법상 감정평가시 공시지가의 1000분의50이다 그래서 일부 특정인에게 현실가격보다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공유재산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는것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업무처리가 그런건지 지난 회기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인력이 모자라서 업무 처리가 지연된다면 보충 인력을 지원 받아서라도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은닉된 재산이 많이 있으므로 빨리 발체하여 군소유로 이전 등기 조치가 조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제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답 변

금년도에 공유재산 일제조사와 권리 보존 조치를 위해서 계획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이 목적은 공유재산 일제 전수 조사후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군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토지 대장상

에 고흥군 명의로된 모든 재산을 전부 발체하여 행정 재산, 잡종 재산으로 분류, 소관별 관리 책임 한계를 구분하여 지목변경 토지합병등 현지와 일치 시켜 사용 허가라든지 대부계약이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은 전부 현실화해서 미등기 재산이 발견될 때는 반드시 관리 보존 조치하도록 방침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 토지가 2,582건인데 토지대장상 발체해 놓고 보니까 32,021건 그리고 건물이 164건 등 총 32,185건이 발체되어 읍면별로 현지 실태 조사중에 있으며 실태조사가 끝나면 최종 군 조정협의회를 개최해서 해당 부서별로 인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욱)

의원 유택근

질 문

천혜 관광 자원인 청정해역과 아름다운 다도해등 자연 경관이 빼어난 우리고장은 관광 수익이 지역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리라 생각되며, 관광객을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과 친절환 서비스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관광 수입의 근원지인 녹동항에 폐차, 폐선, 잡상인 그리고 무질서한 주정차들로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녹동항은 수산청 1종어항임에도 우리군 그리고 수산청 및 수협은 서로 관리권을 상대방에 미루고 있어 그로인한 피해는 곧 우리 군민이 보고 있다.

수산청 훈령 제500호에 수산시설 관리 규정 제2조 제2항에 어항시설의 관리 감독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되며, 1, 3종 어항 시설의 관리 대행자는 당해 지역 수산업 협동조합장이 되며, 관리 감독자는 어항시설 관리 대행자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위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관리권을 위임 받을 수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리권을

위임 받아 관리할 대책은?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답 변

농수산부 훈령 수산시설관리 규정의 목적은 수산시설을 효율적으로 보존 또는 운영하여 투자 효과를 거양 하므로써 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시장 군수가 어항시설을 관리 감독자로 지정된 규정을 없으며 다만 어항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금지행위 (어항 시설 손괴행위 또는 동물의 시체 버리는 행위) 제4조 장애물 제거 행위 (어항 구역내 어선 항해를 방해하거나 어항 시설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제5조 어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어항 구역내의 항로 또는 지정 어선의 통행 제한 그리고 어항시설 피해 확대 방지 및 응급 복구는 군수에게 관리 위임된 사항이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깨끗한 어항 다시 찾고 싶은 녹동항이 될 수 있

도록 도양읍과 수협이 힘을 모아 관리 정비토록 최선을 다하겠음
(수산과장 이 성 환)

의 해체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 문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자금 지원에 따른 대상 업체선정의 문제점?

문민정부가 구시대적 행정인 권위주의, 관료주의,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 공평, 효율성 있는 행정, 도덕성 있는 사회, 믿음 있는 사회등 쉼을 맑기 운동을 부르짖고 있는데 아직도 그 타성에 젖는 것은 곧 문민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 보여진다.

'92년 12월 농수산부 지침에 의하면 '93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대상 업체 선정에서 우리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엄선한 해당 업체 순위를 전라남도에서 임의로 순위 변경하여 농수산부에 추천 하는것은 그 지역 농민을 대표한 발전 심의회와 15만 군민을 우롱한 처사로 보아지므로 유명무실한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임

답 변

농어촌 발전심의회 설치 운영 근거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90년 4월7일자로 법률 제4229호로 제정 공포된 법이며,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7조 대통령령 제13,063호로 공포된 법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한 것이며, 도나, 시,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20명 이내로 설치 운영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농수산물 수급안정, 농외소득 개발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없이 군수가 임의 해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업체별 사업 계획을 취합 심의결과 전통식품으로 생산단체인 고흥군 수협외 3개 단체 그리고 일반 업체인 과역노일식품외 3개 단체등 모두 8개 업체

를 선정, 생산단체인 도에 보고 하였으나 도에서 전통식품이나 일반 업체는 제외되고, 생산자 단체인 고흥군 수협과 두원 농협만 사업이 확정되고 기타 업체는 사업 물량을 배정받지 못했으며, 이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도에서 농수산부 추천 과정에서 우리군 농어촌 발전심의회 결과를 무시하고 나로도 수협과 고흥수협의 순위를 일방적으로 바꾸어서 추천했다는 당시 여론이 있어 그 순위를 도에 확인해 본 결과 도 유통계장의 답변에 의하면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 순위 결정이 곧 도의 결정이 될 수 없지 않느냐, 도단위에서도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개최 결정하기 때문에 시·군 순위가 곧 도의 결정이 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시·군에서 추천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천할 것이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당초 군의 추천 순위대로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기본 설계 심의를 마치고 착공 단계

에 있으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산업과장 전 규 호)

의원 신 윤 식

질 문

우리군의 구체적인 농정수립과 대책은?

현재 이농현상은 자녀 교육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아 소득이 적기 때문이다. 때와 같이 해서 우루과이라운드등 날로 물리해진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볼때 누가 농촌을 지키며 살려고 할 것인가. 특히, 쌀시장 개방의 압력이 가해진 상태이고 그나마 추곡 수매량 감소와 수매값의 소폭 인상으로 농민의 심정은 어디다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에 반하여 농업인구 노령화로 노동력 마저 없는 현실속에서 수도작 대용으로 군 자체적으로 기껏해야 도비와 군비를 약간 투

자해서 노동력이 많이 드는 비닐하우스 그리고 전문적인 농업지식을 요하는 양다래 재배와 전망이 불투명한 유자나무나 권장하는 것이 우리군 농정이라면 다시한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농현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자나 노동력이 적게 드는 농업을 권장하므로써 고향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농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농촌문제의 해결이 선결 과제인 농촌을 살리기 위한 우리군의 구체적인 농정 수립과 대책은? 그리고 관내 휴경지는 얼마나 되는지?

(제2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답 변

우리군의 총 경지면적은 22,000헥타로 그중 답이 14,000헥타, 답이 8,000헥타이며, 농가수는 22,000가구로 76,000여명이 농사에 전념하는 전형적인 농군으로 이는 전체 가구수의 64%로 우리군의 사활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92년말 우리군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 93년 우리군 총 예산중 20% 198억을 농수산 행정에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더 산업 행정에 투자율을 높일 것이며, 첫째 간척지와 진흥지역을 제외한 답작을 과감하게 난지과수나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신선채소를 소득작목으로 확대 재배 할 것이며, 둘째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벼 농사도 직파재배 및 완전 기계화로 추진하여 모든 농수산물 품질향상 대책에 집중 투자 할 것이며, 셋째 농업기반 구조개선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96년까지 진흥지구는 완전 경지정리를 해주어 기계화와 농협, 민간인을 유도 농축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는데 정부는 '92년부터 '98년까지 고품질 생산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하여 유자시험장 유치와 아울러 농촌지도소를 지역 농업 개발센터로 육성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음. (군수 허 길 남)

질 문

내수면 개발에 대한 수산행정 구상은?

우리군민의 70~80%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군민 소득이 날로 감소 일로에 있는 현실임. 그 이유는 노동력의 노령화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이기에 내수면을 개발하여 토하 양식장과 참게, 자라 등 시설만 갖추면 그일에 1회 정도 소요만 투자해도 별문제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없는 노약자도 힘들이지 않고 농사를 짓는것 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수질오염, 농약공해등 환경보호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군 수산행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년처럼 부정 어업을 한편으로는 장려하고 한편에서는 단속하는 행정을 반복할 것인지?

(제2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답 변

우리군은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해면 어업에만 치중하여 다소 내수면 어업은 별로 투자하지 못하였으나 '93년도부터 내수면 개발계획을 착수 시험양식으로 토하양식 2개소, 참게 양식 8개소, 자라양식 1개소를 도비, 군비 지원과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4년도 계획으로 토하양식 2개소가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추정예산지 토하양식 6개소, 참게 10개소, 자라양식 1개소, 뱀장어 2개소, 참게 종묘 배양장 2개소, 내수면 종묘방류 5개소등 총 26개소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어업 단속은 인원 장비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단속 해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나 '93년도 계획으로 단속 목표가 90건에 91건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앞으로 어민 교육을 선행하고 난후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가겠음.

(수산과장 추 영 규)

의원 김 남 규

질 문

석산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를 둘러보면 석산 토석 채취 허가를 득하고 1~2년 동안 채취를 하다가 그대로 방치하여 미관상 좋지 않는 석산이 많은데 이는 즉 산림을 훼손한 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결과가 되겠는데, 휴업계를 제출하지 않고 방치한 곳은 몇 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휴업을 하면 즉시 복구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또한 휴업기간 내에는 복구조치 할 수 없다면 휴업기간은 몇년이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답 변

법적으로 토석채취하다가 개인사

정등으로 채취를 못할 때에는 휴업계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휴업계가 제출되면 휴업 기간 동안 채취를 유보해 주고 단, 휴업계 제출없이 돌이 만나와서 폐광될 장소같으면 조사하여 즉시 복구조치를 취하고 있음. 현재 본군 관내 휴업계 제출없이 휴업한 곳은 한곳도 없으며, 휴업계를 제출하고 휴업한 곳은 5개소가 있으며, 휴업기간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채취허가 기간 내에서만 가능함. (산림과장 최 진 옥)

의원 김 동 인

질 문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나 방침은?

먼저 군수께서 고흥군 직영 농수산물 직판장을 서울에다 설치하여 고향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판매하겠다

는 성의에 진심으로 이자리를 빌어 찬사를 드리면서 특히 현지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의욕과 열성이 대단함이 엿보여 호뭇하였음

그러나 농민후계자 직판장은 사실상 후계자 연합회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군 직영 직판장과는 책임 소재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할 것이나 설치 목적은 모두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직판 하므로써 제값을 받고 판로를 개척하여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므로 다를바 없다 할 것이며 특히, '92년에 1억원의 군비를 지원해 준 사업이므로 군에서 사후 관리 감독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후계자 직판장 개설이후 운영 실태를 어떠한 방법으로 몇회나 확인 또는 보고를 받은바 있었는지, 사후 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 왔는지?

둘째, 확인 당시 진열된 50여종 농수산물 품목중 고흥 유자청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거의 타 시군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어찌 고흥군 농민후계자 직판장이라 명명 할 수 있겠는지? 특히, 타 지역 쌀을 포장

만 고흥 갯논쌀로 둔갑 하므로써 고흥군 직판장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셋째, 목적에 위배한 직판장 운영에 지원해 준 군비는 회계 규정상 어떻게 해야하며 앞으로 후계자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이나 방침은?

넷째, 현재 직판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계 처리내용을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통한 확인으로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현재 처리하고 있는 회계 처리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구입처는 생산 농가인데도 장부에는 구입에 동원된 일부 직원 명의로 등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다섯째, 제1회 추경 예산이 7월3일 승인되어 2개월이 되었는데도 예산에 계상된 직판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필수 일상 경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여섯째, 앞으로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대책과 특히 회계처리 방침을 구체적으로 답변 요망.

답 변

첫째, 직판장 운영 실태 파악은 당초 개장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수시 점검확인해야 하나 우리군은 후원 협조기관으로 물품구입, 판매과정에 직접 참여 하지 않고 군에서 필요에 따라 판매 실적 보고를 받아 업무에 참고해 왔으며, 일정기간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운영 현황을 보고 받거나 현지를 출장해서 물품 구입 판매현황을 확인 점검하지 못했음.

둘째, 군수 지시에 의하여 산업과장과 농어촌 개발계장이 현재 직판장을 방문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타 시군 쌀을 판매하고 있는것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즉시 전량을 반품하고 우리군 쌀을 판매토록 조치하였으며, 지역 농수산물 판매 촉구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수시 확인 점검토록 하겠음.

셋째, 앞으로 운영 실태를 지켜 보면서 당초 목적대로 반드시 우리군

농수산물을 판매토록 적극 지도 확인하고 부실 경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군비 일부를 지원해서라도 육성 발전 시켜 나가는 방법과 계속된 경영 악화로 후계자 스스로 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대기간 이내라도 임대료를 회수하는 방법등을 검토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넷째, 지난 7월6일 개장한 고흥군직영 특산물 직판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종 대장 비치 장부정리등 회계 질서가 다소 미흡했던 것은 이 사업을 우리군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운영에 필요한 관계 규정이 없어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안 현직 소장이 판매 물품 대금에서 운영비를 일부 충당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므로 즉시 시정 조치하겠으며 또한 물품 구입처 명의를 공무원 명의로 등재한 사유는 산지에서 구입한 찹쌀, 깨, 팥, 조, 녹두 등 구입하는 공무원이 생산 농가를 상대로 일일이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상인을 통해 수집해 온

잡곡류를 공무원 명의로 구입하여 납품하고 있어 구입자를 공무원 명의로 등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직판장 판매원에 대한 일상경비중 인건비를 '93년 7월7일부터 발령 일자별로 계산, 남자 판매원 4명에 대하여 '93년 8월9일자로 7월분 인건비 2,352,300원을 지급하였으며, 판촉 활동 보상은 여직원을 포함하여 5명에 대하여 월 25일간 근무일을 기준해서 1일 1만원씩 계상, '93년 8월31일자로 7,8월분 203만원을 개인 통장에 입금 조치하였으며, 단, 7급 소장은 소속과인 사회전흥과에서 월액여비 월5만원을 7월분까지 지급하였으며, 파견 근무자에 대한 장기 출장 여비 기준에 의해 8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계획이며 그외 직판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차량 유지 관리비, 수용비, 수수료등은 그동안 지급 방법과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지급이 늦어지게 되었던

것은 사실임.

여섯째,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특별히 연구한 바 없으나 그간 경험을 토대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으며 특히, 회계 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군 금고 계약이 된 농협 고흥군지부와 직판장이 소재한 서울 성북구 삼선동 농협과 충분히 합의를 거쳐 직판장 소장을 임시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임명하여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 봉급 거래등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93년 8월 31일자로 조치한 바 있으며, 회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예산 회계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지도 교육 차원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 회계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전 규 호)

의원 류 준 상

질 문

고흥남계천 오·폐수 원인에 대한 단속과 대책은?

남계천에서 흘러들어온 오·폐수가 장수 저수지를 거쳐서 해창만 간척지의 농업용수로 사용된 후 영남면과 포두면의 해양으로 흘러 내려 인근 어장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 주민들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어 주민들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남계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오·폐수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단속과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창만은 앞으로도 계속 정화가 되어야만 지선 어민들이 정든 고향땅을 떠나지 않고 내고장을 지키며 생업에 열중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해창만 조류지의 정화 문제에 대한 견해는?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답 변

남계천 수질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는 폐수 배출업소와 축산폐수로 볼 수 있으나 '93 남계천의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남계천 가꾸기 장·단기 계획”을 수립 강력 추진 할 것이며, 우선 7월 한달간 중점 대민 홍보기간으로 설정, 대대적인 대민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천 수질을 개선한 다음 잉어, 붕어등 물고기를 방류하여 읍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장기 계획으로 하상 정비와 오수 분리 관로설치를 위한 남계천 정화사업을 '94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또는 사업계획을 보고 하였으며, 을 상반기중 고흥읍 관내 배출업소 2개소를 폐쇄 명령하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세차장 2개소와 병원 1개소에 개선 명령과 배출 부과금 1,516천원을 부과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삼경산업 3종 업체도 수시 지도 점검하고 특히, 해창만 간척지 주변 축산 폐수 배출 14개 농가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을 연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는등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음.

(환경보호과장 김 기 환)

질 문

'93추곡수매량은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여 군민 신뢰를 받을 것인
지?

우리군의 추곡수매의 배정량이 타군
에 비하여 많은 배정을 받은 것은 많
은 식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 할 때에
도 당연히 식부 면적에 따라 우선하고
나머지는 종자나 자가 식량 그리고 자
연 감모량등 자가 소비 감모량을 감안
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배정하여야 한
다고 생각되며, 농림수산부나 도의 지
침에도 벼 식부 면적에 기준하여야 한
다라고 되었다. 그런데 본 의원이 '89
년도 부터 '92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
곡 수매량 배정을 볼것 같으면, 어디에
다 근거를 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예나 지금이나 모든 행정은 근
거와 기준을 원칙으로 정확하게 이루

어져야만이 군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
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93
년도 추곡 수매 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행정을 펼 것인지?

(제21회 제2차 본회의)

답 변

'92년산 우리군의 추곡수매 배정량
은 1차 557,815가마, 2차 43,495가마
로 총 601,310가마가 배정 되었으며,
'92년 배정기준을 보면 1차분 배정
은 농수산부나 도의 방침이 '91년산
추곡 수매 실적으로 배정했고, 2차분
은 '92년 식부 면적을 기준으로 배정
이 되어 왔기 때문에 군에서도 식부
면적 기준으로 배정하였으나 검토사
항을 보면 식부면적으로만 배정 했
을 경우에는 식부면적이나 수매실적
이나 마찬가지로 되겠습니까라는 입
출입 경작자들의 이해 관계가 다르
므로 '93년도 부터서는 중앙의 방침
이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
의 수매량 배정기준이 달리 올 것으

로 추정되기 때문에 중앙 방침에 의해서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산업과장 전규호)

의원 고 임 준

질 문

고흥터미널 이설 방침과 추진 대책은?

군내버스 운행 및 직행버스 대합실, 그에 관계된 정류소 문제로 직행버스와 군내버스가 비좁은 공간속에 같이 쓰고 있어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정류소가 조잡하고 불결하여 군민 보건향상은 물론 편의시설이 불편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완행버스를 타고 녹동에서 제일병원만 가더라도 시내에서 내렸다가 다시 택시를 1,500원에서 2,000원을 주고 병원에 가야되는 웃지 못할 현실을 감안해서 녹동에서 동강까지 구간

을 변경해서 정해 놓으면 군민의 불편이 덜 할 것이며, 경비절약도 되리라 생각되며, 직행버스 및 군내버시 정류소 앞에 택시 승강장이 없는 곳은 우리군 뿐이라고 보며, 이 모든 불편사항을 감안할진데 사실상 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경제성, 이익성 때문에 군수가 결정하기는 상당히 힘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

(제2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답 변

여객 자동차 터미널 법에 의하면 공용버스 정류장과 전용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있으며, 공용버스 정류장은 말 그대로 각종 군내버스나 완행 그리고 직행버스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정류장이고 전용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자가 사업에만 이용하기 위한 터미널이다.

지금 고흥 터미널은 공용버스 정류장으로 면허가 되어 있으며, 직행

버스와 완행버스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군내버스를 녹동에서 동강 구간을 바로 갈 수 있는 노선을 운행 해달라는 내용은 군내버스의 기점이 차고지가 있는 고흥을 기준으로 운행 계통이 인가 되었을 뿐더러 모든 차량은 차고지를 기점으로 할 수 밖에 없고, 구간운행후 승차권의 회수와 급유, 세차, 정비, 배차등 복합적인 사항이 수반되므로써 녹동에서 동강구간을 바로 갈 수 있는 노선으로 변경은 곤란하며 현재 1일 10회 운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의 적용에 따른 결정 고시등 복합적인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는 검토 할 수 없고 이후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할 과제로 판단됨. (지역경제과장 백 태 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적 소독 실시 대책은?

전라남도 사무조례에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전염병 예방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쥐, 벌레, 기타 전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경우 병실에 바퀴벌레가 우글거리고 있어 문병자까지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고 있고, 퇴원시 가제도구에 휩싸여 가정에까지 매개하고 있는 현실이다.

공중위생법 제26조 및 27조 그리고 예방법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 이용시설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생관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평소 병원 관리 책임자와 지도감독하는 감독관의 안일한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평소 병원 관리 책임자와 지도감독하는 감독관의 안일한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질 문

그리고 마약법 제6조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 또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원료, 종자, 종묘의 소유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5월중에 마약단속반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적발되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바에 있는데, 그 업무 취급 소홀로 우리 군민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는지?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답 변

전라남도 사무 위임 규정과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고흥 ○○병원은 소독 의무 업소는 아니며 다만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토록 수차 지사한 바 있고, 자율지도 점검을 하였으며,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수차 하였으나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였으며 소독 미실시 부분에 소독 명령서라든가 행정지시를 해서 철저히 소독을 실시토록 촉구하였으며, 마약법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앵속 경작 일제 단속을 5월말경

개화기에 순천 검찰청과 보건소 합동단속을 실시, 도화면 당오리 강춘자의 2명을 단속하고 앵속 7주를 적발하였으나 구속은 되지 않고 현재 처리중에 있어 벌금이 예상됨.

(보건소장 허 득 형)

의원 최 형 문

질 문

소외된 오지·낙도에 시설 원예를 위한 예산 지원할 용의는?

오늘날의 우리 영농법은 계절이 따로 없는 전천후 기계화 영농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 특히, 오지·낙도 농민들은 타지역에 비하여 많은 시간의 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행정 지원마저 잘 미치지 못한 지역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음.

그렇다고 행정이 잘 미치는 편리한 곳만 골라 지원하고 불편한 지역은 소외

시키고 있지는 않으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예산 지원액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오지·낙도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유는 관정을 1공 시설하려고 하여도 오지·낙도에서 시설을 해줄 업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지·낙도에서 일을 하면 각종 경비가 많아 이득이 없으니 일을 하려하지 않기 때문에 제때 시설을 못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으로 소득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오지·낙도와 타지역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하우스 시설 재배라고 생각하는데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농업기술 기타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행정지도와 지원이 없는 것은 국가에서 시도한 균형발전 의도에 역행하는 행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앞으로 대책은?

(제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답 변

신농정 추진 계획에 의하면 기술 농업, 고품농업, 지속농업 그리고 수출농업의 4대 신농정 방향을 정립하고 이

를 위해서 정부와 농민이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면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홀로서기, 일동주의 등의 운동을 펴나가기로 하고 우리군에서도 오지·낙도라 할지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하우스나 과원 조성사업, 축산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의지가 뚜렷하고 홀로서기의 의지가 뚜렷하면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오지·낙도 농민이 사업 신청을 하였을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해 가겠으며, '91년 금산면에 시설원에 300평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도서지역에서 사업신청이 적었고 사업계획도 미약해서 사업의 심의과정에서 탈락되는 경향이 많았는데 앞으로 도서지역에서 신청된 사업계획은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온힘을 기울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전 규 호)

질 문

대서면 정주권 사업 부실시공에 따른 대책은?

'92년도에 발주한 정주권 사업인 대서면 석장에서 신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잘못 시공되어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지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 질문코자 함.

첫째, 대서면 정주권 사업인 석장 - 신기간 도로 확포장 사업중 '92년 시행한 사업량, 사업비는 얼마며, 공사기간은 언제고 시공회사는 어디이며,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은 누가 하였는가?

둘째, 대양토건에서 하도급 받아 시공되었다고 하는데 하도급된 회사는 어디며 특수 건설업 허가는 있는가?

셋째, 건설업법 제33조,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공사의 현장에 주된 공사 종목에 상응하는 건설 기술자를 현장 배치하여야 되고 현장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재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때 건설업자의 기술자가 현장 상주 시공하였다고 보는가?

넷째, 감독공무원은 무엇을 지도하였으며, 어떻게 감독하였는가? 출장 명령부에 의한 출장 지도한 횟수는 몇일인가? 시설부대비 중 지도여비로 지급한 금액은?

다섯째, 일부 구간 다짐 불량으로 노면 균열 및 침하발생 내역은 얼마며, 흙쌓기는 다짐후 1층의 시공 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 부설하여 다짐 장비인 로울러로 균일하게 다진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후속작업을 반복하였다면 노면 균열 및 침하가 발생한다고 보는가?

여섯째, 포장된 노면에 물이 고인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노체, 노상의 프로파일링 미실시와 보조기층, 아스팔트의 수평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감독공무원은 준공검사시 평탄성 시험기를 사용하여 보았는가?

일곱째, 절개지 부분중 암벽층이라는 사유로 폐쇄임을 하지 않아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를 청닝쿨이나 다른 방법으로 차폐할 용의는 없는가?

여덟째, '93년 6월 14일 기 하자 보수 지시하였다 하나, 우금까지 조치 안된 내역은

무엇이며, 건설회사(업자)가 조치할 때까지 방치한 사유는?

아홉째, '92년도에 하자가 발생한 업자가 '93년에 다시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한번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업자에게는 또다시 입찰에 응치 못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찰에 응하게 하여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규제할 방법은 무엇이며, 또 하자가 발생 안한다고 볼 수 있는지?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사)

답 변

첫째, '92년도에 시행한 정주권 사업량은 확장이 1.46km, 포장이 1.3km이며 사업비는 총 504,912천원 중 도금액이 352,387천원이며, 관급 자재 철근, 아스콘 대금으로 108,534천원, 기타 사업비로 용지 매수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83,991천원이며 사업기간은 '92년도 8월1일부터

'93년 1월 18일로 5개월간에 걸쳐서 시공 하였으며 도급회사는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06번지 대양토건 대표 강영철이며, 감독 공무원은 당시 산업과 소속 지방토목서기 유재영이며, 준공검사 공무원은 건설과 토목기사 김창식입니다.

둘째, '92년도 시공 당시는 대양토건 강영철씨가 입찰을 해서 거기에 전무로 있는 장기익이 현장에서 사업을 하였으며 아마 직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토공이나 장비는 구일토건 김성배가 공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은 아니고 여기 서류상으로는 장기익씨가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시공회사 현지 기술자는 토목기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송대석이 현장에 배치되어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를 하였다고 봅니다.

넷째, 종합행정수행 등으로 현지에 상주해서 근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주요 공정 관리에 현지 출장을 해서 지도하였으며, 총 공사기일은

165일중 74일을 현장에 갔고 본 공사로 출장 횟수는 57일정도이며, 감독 여비는 71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섯째, 노면 균열 및 침하 발생은 입구에 승강장이 있어서 거기 노면 상 변호 24지점, 26지점, 123지점, 124지점 이렇게 해서 전부 침하가 되어 비탈길 다짐 불량으로 노상 보 조기층이 지역적 불균형 및 구조물 뒷부분과 성토 다짐 불량으로 인한 침하의 요인으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성토 및 재료 30cm에 대해서 파고 충분한 다짐을 했으나 많은 구간이 연약지반이 발생하여 일부 구간에서의 저습지에서 스폰지가 일어난 상태이며, 침하발생 원인으로서는 연약 지반 처리를 못 해서 스폰지가 일어난 것으로 봄.

여섯째, 노면에 물이 고인 부분은 일부 침수 구간으로 당시 감독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써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기를 공사장마다 전부 갖출 수가 없어서 시험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곱째, 절개지는 암으로 되어 있어서 설계서 상에는 1대 0.7로 벽면의 안전성을 위해 시공하면서 상당히 깎아서 1할로 현재 유지가 되어 있으며 토공 유실이 1km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주위 여건을 고려해서 녹화대책을 강구할 계획임.

여덟째, 건설과에서 현지에 가보니 4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여 시공 회사에 지시를 하였으며, 입구에 관이 잘못 묻혀 민원이 있었는데 물빠진 수로에 통신 관로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공사를 하였으나 논에 복토를 했기 때문에 물이 잘빠지고 있고, 금년 여름에 폐시공을 하였으나 폐가 여름에 불여서 일부는 파릇파릇 살아 있고, 생육 상태를 봐서 다시 보완 시키겠으며, 시공 회사에 하자 지시한 것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금년 8월 비가 많아서 회사에서 토공 작업을 할 수 없었고, 그 외에 균열이 가고 해서 다시 보완할 계획임.

아홉째, '92년도에 대양토건 강영철이 하도급해서 '93년도는 성락건설 대표 정구창이 경쟁 입찰을 해서 전문 건설업체 면허를 가진 하도급으로 계약해서 공사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에 있어서 미비한 점은 기술과 장으로서 통감하며 도로 공사감독을 읍면장에게 위촉하여 감독토록하고 부실시공이나 다짐이 잘못된 것은 감독이 현장 상주하고 이탈할 때는 감독 관청의 승인을 득하라는 지시가 기 되었으며, 공사장에서 해야 될 사항을 복사해서 의원님들께 드려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리겠음. (건설과장 송기채)

읍면 복지회관은 계획에 의하여 건립을 해 놓고 운영 관리 및 활용면에서 불진대 군에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복지회관을 예식장으로 활용함에 있어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수준이 향상되어 도시에 있는 예식장에 버금가는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예식장 시설만 갖추려 해도 약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복, 사진 등 추가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복지관이 제대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 주고 결혼식을 지역에서 행사토록 한다면 시간적, 경제적은 물론, 지역주민 화합에도 큰 보탬이 되리라 사료되는바 집행부의 견해는?

(제2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원 박 채 주

답 변

질 문

읍면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활용 대책은?

복지회관 자체 활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것은 사실이며 직접 활용하고 있는 면으로부터 활용방안이 나오면 군에서 더 구체화 시켜서 교

육장으로 활용하는등 타지역에도 파급토록 조치하겠음.

(사회진흥과장 곽 성 봉)

의원 김 선 규

질 문

도로 편입토지 공부 미정리로 발생한 민원 대책은?

군관내 각종 도로가 상당 부분 공부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 관리상 애로가 많을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막대한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이유로 실지 도로이면서도 현지목은 전답, 임야등 개인 소유 재산으로 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가 지금 당장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대금을 청구한다면 그리쉽게 일 처리가 되지 않을 곳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도로 개설 및 확포장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승락을 득

하여 회사를 하였거나 토지를 매입하였거나 간에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관청으로 이전 등기하여 공부상 정리가 되어야만 토지 소유자나 행정청 양자간에 물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중하나 예를 들면 영남면 소재지에서 양화를 거쳐 남열 - 용암 - 우암 - 여호구간이고 또 하나는 간천 - 신성을 연결하는 영남면 일주도로의 약 6km구간으로써 이 도로는 군도 승격 후보도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부상정리가 되지 않아 공부상에는 임야 전답으로 명시되어 있어 언제 문제가 발생할지 심히 우려되므로 언제쯤 공부정리를 추진할 계획인지? (제21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답 변

각종 새마을사업 등으로 추진한 농로안길 진입도로 구제에 대하여는 금번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천코자 읍면으로부터 일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보니 총 7,084필지

이고 면적은 311,545㎡에 달하고 있으며 1단계 조치로 이전등기 가능한 편입토지 1,232필지에 대하여 '93. 6. 25일자로 이전등기 일건 서류를 갖추어 고흥 등기소에 처리토록 요청하였고, 2단계로 잔여 필지 5,852필지에 대해서는 '94. 12. 30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영남면 남부 일 부도로 신성 - 용암간 도로 편입부 지 82필지는 이전등기 완료하였으며 아직 못한 도로 274필지는 조속 이 전토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송 기 채)

의원 송 복 조

질 문

양식 어업권 면허를 관내 지선민
에게 우선 해줄 의의는?

우리군은 천혜의 수산자원이 풍부한
무공해 지역임은 전국적으로 기이 널

리 알려진 사실이며 더욱더 패류 양식
의 적지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관내 어민 소득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증거로 양식 어업권 거
주별 소유현황에 나타나 있듯이 6월말
현재 85건에 925ha가 관외 거주자 앞
으로 면허되어 있다는 사실을 군수가
알고 있다면 군민을 보호하고 이익을
추구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관외 거
주자의 면허 기간 만료시 재개발 요구
나 신규 면허 신청시 관내 지선민에게
우선하여 허가 해준 사실이 있는가?
있으면 몇 건이며 지방자치 시대에 맞
는 수산행정의 일환으로 수산업법 제13
조의 개정을 요구하거나 내부 지침을
마련해서라도 개인별 또는 관외 거주
자 어업면허 만료시 어업권을 지선민
에게 돌려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대책은?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답 변

본군 관내 총 어업권은 794건에

9,649ha로써 90.4%가 됩니다. 그리고 관외 거주자 소유는 최초 29건에 349ha로 3.6%에 해당되며 그동안 우리 군민이 면허를 얻어 객지 분들과 이전 변경을 해가지고 소유권이 변경된 것이 56건에 581ha로 약 6%에 해당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법을 개정토록 상부에 건의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우리 군민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이 성 환)

질 문

관내도로 확포장 우선 순위 기준은?

행정청이 인정하는 관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는 각각 몇 km이고 도로 확포장시 사업의 선정 우선 순위의 기준은 어디에다 근거를 둔 것이며, 연차별 사업 계획은? 그리고 군도의 기준은 그 노선을 군수가 인정한 도로

임에도 우금까지 군 관내의 군도중 확포장은 고사하고 차가 못다닌 미개통 지구는 어디며 몇km나 되며 미개통 지구에 대한 연차별 사업내용과 사업은 지속성,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93년 사업에 누락된 사유는?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답 변

우리군 관내 지방도는 2개 노선에 52km이며 군도는 11개 노선에 165.4km, 그래서 군도하고 지방도하고 15개 노선에 399km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 선정 기준은 '90년말 통계 기준으로 내무부 지시이며 이는 인구수, 자동차 보유대수, 농업생산량, 농기계 보유대수, 학생수는 도로 이용 현황 조사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지시된 종합지수 작성요령에 의해 '91년도 하반기에 선정한 것이 62개 노선이며 511km가 책정이 되었으며 노선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은 타당성 검토를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서 2개 노선을 복수 추천한 것을 다음 년도에 농업진흥공사 기술진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후 완급을 가려 최종 판결은 도 통보에 의해서 시행하며 '92년도부터 장기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군도 미개통 도로는 '유일하게 우리군 관내 7호선인 과역 내로에서 하송까지 2.5km로서 '91, '92년에 15,000만원을 투입 1.6km확장 하였으며 '93년 예산 2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0.4km확장 계획이며 나머지 0.5km에 대해서는 '94년도 양여금으로 시행할 계획임. (건설과장 송 기 채)

직행버스 정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 바도 있어 군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동강, 대서, 남양 3개면 25,000명의 인구가 동강에 정류를 숙원하고 있는데도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라면 주민의 뜻이 중요한지 회사가 더 중요한지를 분석하여 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도에 건의하여 추진한다면 해결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답 변

의원 송 기 복

질 문

동강면 소재지 직행버스 정류에 대한 군의 견해는?

행정은 날로 주민편의 위주로 전향되어 가야 한다고 본다. 동강면 소재지

동강면을 위시한 해당지역 주민의 건의가 7회에 걸쳐 군을 경유 도에 전달 되었고, 군에서도 수차 건의하였으나 불가 처분된 사항이며,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민원이기는 하나 허가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

드리겠음. (지역경제과장 김 기 환)

의원 송 용 현

질 문

식품영업 신규자 조합원 가입에
대한 문제점 발생 대책은?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한 영업자는
당해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
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
여 영업의 종류별로 동업자 조합을 설
립 할 수 있고 동법 제45조에 조합은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과 조합원의 영업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도 및 조합원의 경영지
도 그리고 조합원 및 그 종사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등으로 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규 영업자가 발생
하였을시 영업자의 희망 여부에 따라
조합 가입 신청을 받아야 하나 의무적
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면 반협박식, 반
강제적으로 가입시켜 10~20만원씩

전조합원에게 매월 3천원에서 6천원씩
의 지역적 차별 회비를 차이 있게 징
수하고 있으며, 동법 제51조에 조합은
조합원의 영업 시설에 경영지도 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율지
도원을 두고 조합원에게 지도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식품위생
감시원의 본연의 직무인 단속, 확인,
검사등을 행하므로써 스스로 돈을 거
출 감독기관을 더 만드는 결과를 초래
조합원 상호간 불신과 불만을 야기 시
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조합의
결의 또는 임원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
거나 법령, 정관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
여 조합원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
려가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
는 개선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합원들의 많은 불편과 불신 원성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어도 감독 관청
이 묵시 방치하고 있는것은 위생조합
과 야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
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향은?

그리고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식품 위생법 제66조의 규정

에 의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 감시
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제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답 변

식품위생법 제6조 회원의 가입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대중음식점등
의 영업허가를 받은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회원 가
입은 의무사항이며 회비 징수는 정
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자
율적 운영사항이며, 우리군의 경우
신규 가입비 및 월회비는 12~20만
원이고 조합비는 3천 ~ 6천까지 징
수하고 있지만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보면 비슷하거나 약간 밑도는 실정
이며, 조합의 예산 편성과 회계 검사
는 사단법인 대한요식업중앙회 정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도 및 중앙
요식업 조합에서 실시하고 군에서는
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 운영 규칙
보사부 훈령 제582호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요식업 조합에
대한 업무처리 및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심사하여 '92년도에도 실시,
시정 지시 명령한 바 있음.

그리고 위생 관련 단체 자율지도
운영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율 지도원은 요식업 고흥군지부에
서 선정하여 요식업 중앙회의 승인
을 받아 임명 되고 임무는 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건강 진
단등 개인 위생지도 영업자 준수사
항 허가 또는 신고 조건 이행지도등
감시가 아니라 지도만 하도록 되었
음.

그러므로 식품위생 감시원 공무원
의 단속과 확인 검사와 구별되며 위
생관련 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 제6
조의 자율지도원 복무자세 즉, 준수
사항을 자율적으로 이행 촉구하고
있으나 현장 지도 과정에 지도가 아
닌 단속을 한다면 식품위생법 제4조
에 의거 당해 단체의 임원,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 요구할 수 있으며,
사단법인 대한 요식업조합 자치 경

영차원이어서 일반 군민이 낸 세 부담인 군예산을 영업자 단체의 운영비로 부담 되어서는 안되며 그 이유로는 영업자는 특정인으로서 제반 금지를 해제하여 허가해 줌으로써 그 사람은 특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때문임.

(사회과장 유 종 식)

의원 정 영 표

질 문

1군1명품 사업 효과 및 전망은?

1군1명품 사업에 대하여 우리군의 명품 사업 품종은 유자로서 생산에서 가공까지의 계통적이고 효율적인 체계와 지속적인 연구 발전 및 소득증대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있으며, 지역 특성에 따른 신뢰와 명품의 명예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타당성으로 생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가

요구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확고한 사업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고, 단순 공동 출하방식에서 벗어나 생산 가공 판매의 일괄 지도사업체와 농업 전문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추진중에 있는 농협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면 '93. 6. 19 농협 전남도 지회에서 품목별 생산자, 단체, 유자 전국 총본부를 고흥 종합 농협에 두고 금년 하반기를 제품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으나 이에 대한 1군 1명품사업의 규모(재정, 입지 여건, 연차계획)와 효과 및 전망은?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답 변

○ '93년도 1군 1명품 육성사업 업체 수가 2개소로 두원농협 산지 가공산업 시설 그리고 고흥 유자 영농조합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합해서 141,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로 두원농협 산지 농수산물 가공사업 투자 재원은 농어촌발전 기금으로 융자 년리 5% 3년거치 7년상환으로 건물300평에 기계류

28점으로 보조가 5억, 용자3억, 자담 24,200만원으로 사업비 104,200만원이며, 고흥 유자 영농 조합은 우리 군에서 1군1명품 육성사업으로 지정되어 투자 재원은 교부세가 50%, 국도비, 지방비가 50%해서 2억이 지원되고 자담 1억1천만원등 3억7천만원의 사업이 되겠으며, 입지여건은 단순보편화된 1읍면 1특품 육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생산분야에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 노력이 현재 부족하다고 보며, 사업 추진의 소극적 자세와 지역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시책의 미흡으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며, 농가 소득 시책이 요청된 바 유자 가공산업의 가공제품 및 가공공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 요청된다고 판단됨.

○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 여건을 활용해서 지역 생산을 촉진하고 고용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자 확대 재배

가 요청된다 하겠음.

○ 유자 생산자 중심으로 영농 조합을 설립 생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집중육성이 요청되고 농어촌의 지역 활성화의 촉진책으로 유자가공공장을 설치하므로써 가격 안정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해야 된다고 봄.

○ 연차계획은 유자 우량품 3종 개량보급, 재배면적 확대, 관수시설 재배, 관정개발 대규모 가공공장 설치, 유자 공판장 1개소 설치를 해야 하겠고 효과 및 전망으로 유자 가공공장의 필요성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가공 식품을 개발 보급하여 새로운 품목 개발로 발전시켜 유자 활용도를 높이고 유자 소비를 증대시킬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자를 여러가지 형태로 가공해서 유통시키므로써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은 물론, 유자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이 되겠고,

○ 유자재배 확대로 과잉생산 및 가격하락 및 유통이 부진 할 것을

우려하여 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유자가공 산업은 농민 또는 생산자 전체가 직접 가공하므로써 유통 단계가 축소되어 안정된 가격과 수효를 확보할 수 있으며, 유통 비용을 절감할수 있다고 판단되고 저장을 공급을 조정하므로써 홍수 출하를 막아서 가격 폭락을 완화하고 계절적인 수급조절을 가능케 해 농가 소득증대와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과장 전 규 호)

질 문

권장 유실수의 농지세 부과 근거와 혜택은?

우리 군내 권장 유실수의 농지세 부과관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유자를 비롯한 양다래, 오이등 성과수에서 많은 수익을 얻어서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어 명품 사업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나 군내에서 생산되는 실제량과 농가소득은 얼마나 되며, 그에 따른 세

외수입의 '92년도 실적은 얼마나 되고 만일 세금을 부과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답 변

우리군 권장 유실수 유자, 단감 그리고 논에서 나온 벼와 오이에 대한 '92년도 부과액은 총 171농가에 12,357천원으로 그중 유자농가 23농가에 3,611천원, 단감 2농가에 527천원, 벼와 오이는 논에서 나온 소득을 합해서 146농가에 8,229천원으로 총 12,367천원이며 농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농지에서 나오는 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 공제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초과 농진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가별로 따져서 얼마나 많은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므로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세제상 감면 혜택은 지방세법 제202조에 개산 간척지에서 경작하는 것은 10년

간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는 종교단체, 학교, 사찰에서 경장하는 농지소득에 대한 면세의 혜택만 있을 뿐 다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기초공제와 필요경비만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과세하되 면세 폭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지세 목표가 1천만원 책정되어 있으나 과세 전망은 기상 변화에 다소 변수가 있겠으나 재해가 없는한 작년 기준 1천 ~ 1천2백만원 선으로 예측됨.

(재무과장 김 병 욱)



議會用語解説

● 開 會

의회가 集會되어 活動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 開 議

會期中 당일 會議를 여는 것을 말한다.

● 散 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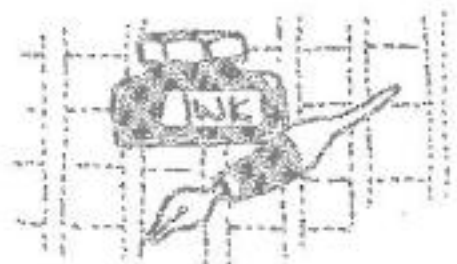
그날의 議事日程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 停 會

일단 開會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것을 말한다, 停會 후 異見으로 회의를 續開하지 못하고 散會도 宣布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일 24:00시가 됨으로써 自動散會 된다.

● 續 開

중지된 회의를 다시 始作하는것을 말한다.



名山 八影山 登山 案内

● 관광 명소 고흥을 소개합니다.

副郡守 鄭 容 淑

넓은 땅과 바다를 안고 質朴한 心性으로 넉넉한 마음들이 모여사는 곳 高興!

전라남도의 東南端에 位置한 高興郡은 총면적이 745.87km²로 소가 누워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半島로서, 2邑14面 4出張所가 있으며, 有人島 20, 無人島 153개소를 품에 안고 있다. 住民登錄上 127千名의 人口가 居住하고 있는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常住人口는 15萬餘名이 족히 될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그러기에 高興사람들은 누구나 雄郡임을 自負하면서 生活하고 있다.

이렇게 雄郡 高興은 해창오마 간척지를 비롯 지금 한창 工事中에 있는 고흥만 간척지의 끝이 보이지 않는 廣濶한 넓은 耕地 面積은 이곳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

과 삶의 지혜를 심어 주었으며, 3面이 바다로 接해 있는 淸淨海域은 땅이 걸지못한 설움을 바다가 덜어준다는 옛말과 같이 農事에서 不足한 家計를 메꾸어 가는 所得源이 되고 있다.

특히 政府의 西南岸 開發施策의 一環으로 나로도를 連結하는 連陸·連島橋 架設工事를 한창 推進하고 있음으로 오는 95年度에는 多島海 海上 國立公園의 絶景을 물에서 만끽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곳 나로도 사람들은 脱島嶼民의 恨을 풀게 되었을 뿐아니라 觀光 나로도 開發에 부른 希望과 期待속에 그날이 앞당겨 지기를 재촉하고 있다.

더구나 산꼭대기에 웅장한 8개의 바위 그늘이 천리먼길 한양에

까지 드리운다는, 고흥군의 鎭山인 팔영산을, 水産과 觀光 資源의 寶庫 多島海 海上 國立公園이 마치 병풍처럼 감싸고 있어, 이는 필시 하늘이 내린 祝福의 땅이라고 말하고 싶다.

따라서 필자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고흥군의 秘境을 한눈에 眺望할 수 있는 팔영산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가장 가까운 登山 코스를 選擇하여 안내하기로 한다.

팔영산은 寶城郡 벌교읍 벌교 삼거리(일명 선군다리 삼거리)에서 東南쪽으로 15호國道を 따라 내려오다 보면 동강면, 남양면, 과역면을 경유하여 점암 삼거리에 다다르게 되며, 벌교 삼거리에서 점암 삼거리까지는 20km로 26分 程度가 所要된다. 점암면 삼거리에는 大形 案内標識板이 設置되어 있는 곳에서 좌측 포장 도로를 따라 진입하여 점암면 소재지를 지나면, 팔영산 아래 두지마을 능가사에 이르게 된다.

점암 삼거리에서 능가사까지는 6.5km로 약 10分이 所要되나, 高興管内의 國道는 대부분 오래전에 포장되어 線形을 바로 잡지 않고 既存 사리 도로에 포장을 한 關係로 路幅이 협소할 뿐아니라, 屈曲이 심하여 絶對 서행을 해야한다는 것을 自家運轉하는 사람들은 銘心해야 한다.

팔영산 登山은 능가사 앞에서 出發하여 下山은 始發地點으로 되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우선 능가사 境内를 觀光하면서 가볍게 몸을 푼 다음 등산을 하는 것이 좋겠다.

팔영산의 앞자락에 고즈넉이 자리한 千年史蹟 능가사는 지금부터 1,500餘年前에 아도화상이란 스님이 創建했다는 寺刹로 700餘年前 彫刻했다는 四天王 木刻과 함께, 大雄殿과 梵鍾 등 地方 文化財가 保存되어 있어 제법 볼거리가 있는 寺刹이다.

無病長壽와 極樂往生을 기원했

던 조상들의 손때가 묻은 능가사를 품에 안은 팔영산은 小白山脈이 西쪽으로 힘에 지친듯 기울다가 東南으로 高興半島를 바라보며 우뚝 멈추어 서있다.

흡사 恐龍의 등처럼 여덟개의 峰이 하늘을 찌를 듯 創立하고 있어 峰마다 이름이 낱낱이 다르니 一峰은 孺影, 二峰은 聖主, 三峰은 笠幢, 四峰은 獅子, 五峰은 五老, 六峰은 頭流, 七峰은 七星, 八峰은 積翠峰이라고 불리운다.

옛 문헌에는 八田山 또는 八顛山으로 기록된 팔영산은 옛날 중국 後魏때 王 拓跋이 하루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여덟 봉우리가 있는 山의 影像이 세수 대야에 비추자,

이 산이 필경 靈山일것이라고 生覺하고 많은 臣下를 시켜 이 山을 찾아 보도록 하였으나, 中國 天地에서는 찾지 못하고 韓半島의 南쪽에서 千辛萬苦 끝에 이 山을 찾아내어 왕에게 보고하였더니, 王은 그길로 이 山의 이름을 八影山

이라 고쳐 부르게 하고, 王이 몸소 이 山을 찾아와 山祭를 올렸다는 傳說이 口傳되고 있으며, 宋八應 장군이 白馬를 채찍질 하여 하늘을 날았다는 애뜻한 八應峰의 傳說도 함께 傳해 오고 있다.

靈山 八影山 八峰 頂上까지 이르는데는 約 5km로 普通 걸음으로 2時間 정도가 所要된다. 그러니까 八影山 코스를 일주하고 出發地點인 능가사로 下山하기까지는 約 8.5km 거리로 3時間이 所要되나, 八影山의 기암 절벽을 관망하느라 주춤거리다 보면, 4時間이 걸리게 된다.

등산 코스는 1峰으로부터 始作된다. 능가사에서 계곡을 따라 숲사이로 約 3km를 한시간 정도 오르다 보면 하늘이 흰하게 트이면서 첫 봉우리에 오르게 된다.

溪谷은 원래 乾川으로 장마철에는 물이 흐르고 있으나, 평상 시에는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능가사앞 민가에서 식수를 준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一峰에서 八峰까지 가파른 奇岩 絶壁을 로프줄을 타고 오르는가하면 엉덩이를 바위 틈새기에 대고 미끄럼을 타기도 하고, 바위벽에 몸을 바싹 붙여 기어가기를 反復하면서 그저 한두 차례 땀을 흘리다 보면, 頂上에 우뚝서게 되며 頂上마다 萬物相을 彷彿케하는 奇岩들이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壯觀을 이룬다.

작은 바위가 제보다 몇 갑절이나 더 큰 바위돌을 업고 서있는가하면, 옆구리에 끼고 서있거나, 머리로 받치고 있어 힘이 衰盡해지면 곧 떨어버릴것 같이 危險스럽게 보여서, 보는이의 가슴을 조이게 하는 스릴 또한 만점이다.

그러기에 보는 사람의 위치와 느낌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상을 描寫하는, 팔영산의 정상은 해발 609m의 八峰으로 하늘을 떠 받치는 듯한 그 偉容은, 봉마다 이름이 다 다른것과 같이 각 봉우리에 서서

내려다 보이는 秘境 또한 가지각색이다. 특히 정상에서는 多島海 海上 國立公園을 발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어 星羅碁布처럼 펼쳐있는 많은 섬들의 아름다움을 관망할 수 있다.

이에 선인들은 이를 가리켜 寶石海라 이름하였으며, 하늘 닿은곳이 끝없이 무궁하여 맑은날에는 日出의 장관을 볼수도 있고, 바다 멀리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에 아련히 떠오르는 제주도 한라산도 바라볼 수가 있다.

또한 春秋 兩分에는 老人星을 관망할 수 있으므로, 各處에서 몰려드는 관광인 차가 끊이지 않으니, 이와 같은 奇妙絶景의 명승을 보지 못한 사람은 마치 中國사람이 金剛山の 一景을 願함과 같다고 하는 名山인 것이다.

더구나 이름모를 山野草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 보기도문 稀貴植物이 群落을 이루고 있어서, 自然

探訪은 물론 山林浴을 하기에 말이 필요치 않은 곳이므로, 팔영산의 등산은 머물고 가는 것이 좋다. 도시의 日常生活에서 찌든 疲勞를 이곳에서 말끔히 씻어 버리고, 아쉬움을 뒤로한채 산을 내려오면, 多島海 海上 國立公園을 위시하여, 海水浴場, 寺刹, 名勝地가 길손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특히 발길 닿는곳 마다 갯바위 낚시와 선상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며, 감성돔, 농어, 도다리, 우럭, 볼락, 놀래미등이 많이 잡혀서, 많은 낚시꾼들의 입맛을 돋구는 곳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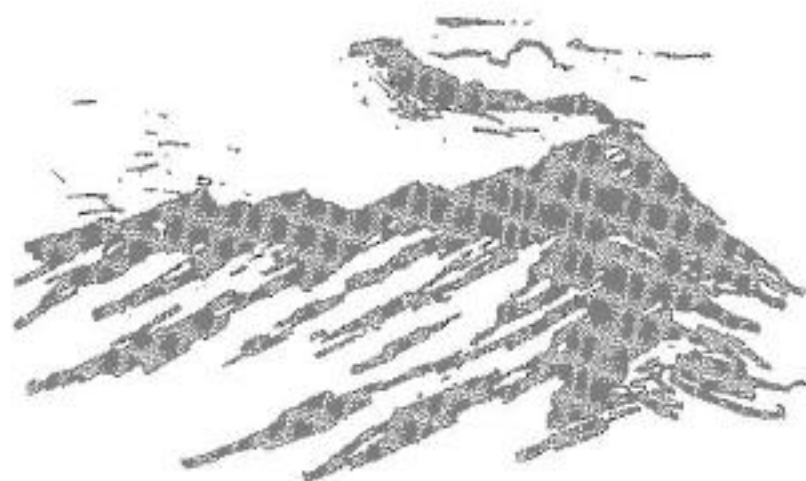
더구나 95년도 상반기에 나로도 連陸橋와 連島橋가 竣工되면 多島海 海上 國立公園에서 棲息하고 있는 바다 고기를 肉眼으로 직접 볼 수 있어 고흥관광의 大單元을 장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天上의 秘境에 견줄만한 이곳 고흥의 자연은, 풀한포기 돌

맹이 하나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이곳 고흥을 가리켜 福祉의 땅 고흥, 未來의 꿈을 가꾸는 고흥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기에 볼거리 뿐만아니라 新鮮한 먹거리를 甘味할 수 있는 觀光 名所 고흥으로 여러분을 자신 있게 안내하고 싶다.



역할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의회사무과장 신 충 우

어느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 두 마리가 겨울잠을 지내야 했다.

추위를 덜기 위하여 두 마리의 고슴도치는 서로 가까이 접근하였고 그러다보니 추위는 덜하였으나 몸뚱이의 바늘이 서로를 찔렀다.

떨어져 있으면 추웠고 가까이 가면 찔리고 밤새 반복하다보니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겨우 새벽녘에야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 춥지도 덥지도 않고 찔리지도 않는 거리를 찾아 그해 겨울잠을 잘 지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방의회 구성 초기에 각 지역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위상문제, 권한의 한계등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서야 할 자리를 찾기위하여 고슴도치의 겨울나기처럼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모습도 가끔 신문등 매스컴에

서 볼수 있었다.

돌이켜 보면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라지만 군단위 자치단체 의회는 부활이 아닌 처음 탄생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그 당시의 도와 면 단위 의회구성 여건과 지금과는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측면은 물론 주민의 생활이나 의식구조 등 제반여건이 고도화되어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상황에서 탄생과 동시에 보호받을 겨를도 없이 걸음마가 시작되어 갈망하던 지방화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둘러 급류를 타고 성장과 동시에 의정활동이 전개되어 오늘에 이르지 않았는가 싶다.

붓물처럼 일시에 쏟아지는 주민의 무한정한 욕구에 편승하여 주민의 권익을 중시하고 대변해야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지역개발과 주민을 위하여 하려고하는 의

정활동 의욕은 충천하였지만 호사 다마격으로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고 제도적으로 각종 규제의 걸림돌이 있어 결에서 보기에 안타까운때도 있었으나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주민이 의회에 거는 기대가 너무 컸고, 성급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다.

“달걀을 보고 새벽을 알리기를 바라고, 탄환을 보고 새 구이를 찾는다.”라는 말과 같이 너무 성급함과 큰 기대가 지나치지 않았는가 새삼 뒤돌아 보면서 냉수도 쉬면서 마시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차분한 마음으로 이제 겨우 탄생 3년이 된 오늘, 지방자치와 의회를 발전 지향적이며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옛 성현의 말씀에 “한몸속에 있는 간이나 쓸개도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초나라와 월나라와 같은 것이며, 같은 처지에서 본다면 만물이 모두 하나다”라고 한 구절이 생각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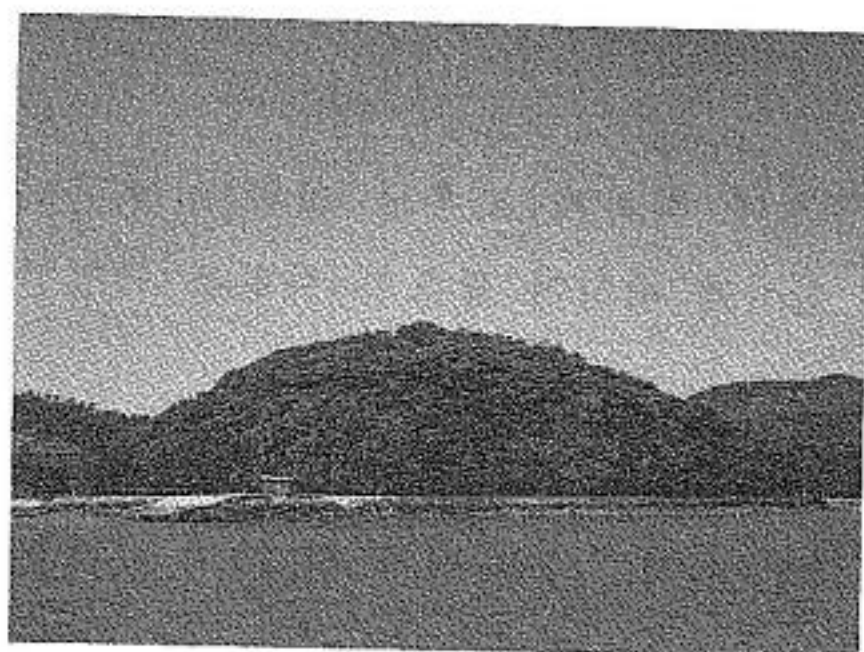
주민과 집행부인 군과 의회가

비록 하는 역할은 달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으로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함이라면 억지로 갈라놓으려 해도 갈라설 수 없는 같은 처지의 하나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제부터 보여줄 기대되는 완숙된 지방자치의 참모습은 군민과 군과 의회가 지역의 현실문제를 토론하고 펴이나 자주재원이 빈약한 어려운 살림살이를 같이 걱정하고 고통을 분담하면서 나 하나부터 봉사하고 양보하고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의식개혁의 생활풍토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면 당장 응분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인내하면서 고슴도치의 겨울나기처럼 춥지도 덥지도 않고 찢리고 아프지도 않는 거리를 찾아 하나가 되고 가까운 이웃이 되어 끌고 당기고 밀면서 각자 역할을 위하여 노력할 때 지방자치는 조기에 정착될 것이며, 살기좋은 고장은 필연코 이룩되리라 믿는다.



문화재 안내



봉래면 상록수림

〈천연 기념물 제362호/89. 1. 14 지정〉

상록수림은 봉래면 신금리 해안에 인접해 있으며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황철나무, 감탕나무, 생달나무, 보리밥나무등 60여 종류의 수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는 수령 약 300년 정도의 노거수도 있다. 평균기온은 섭씨 14℃, 강수량은 1,400MM에 이르러 상록활엽수가 번성하는데 알맞는 기후조건은 이루고 있고 특히 상록수림의 중앙에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마신을 모시는 당이 있어 오늘날에도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한 제를 지내고 있다.

비자나무숲은 난대성 식물로써 포두면 봉림리 금탑사 주위에 인공식재된 비자나무 숲으로써 신라 선덕여왕 6년에 심는것으로 추정되며 비자나무숲 밖은 천연 활엽수림으로써 서어나무, 개어서나무, 까치박달, 졸참, 갈참, 산딸기, 느티나무, 굴참나무등이 우거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전남북도에 몇군대만 군생하고 있을 뿐이며 큰나무는 점차 사라졌고 목재는 쓰임새가 다양한 천연기념물이다.



금탑사 비자나무 숲

〈천연기념물 제239호/72. 7. 31 지정〉

알 아 둌 시 다

◆ 고흥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정 1991. 4. 13 규칙 제718호

개정 1992. 4. 10 규칙 제 4 호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청원서의 제출)

- 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 (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 제5조 (이의 신청)

- ① 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한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

-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할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
- ② 청원요지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 기재한다.
-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8조 (청원인 등 진술)

-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제척과 회피)

-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제11조 (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회의에 보고한다.

1. 군수가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제12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할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 제14조 (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 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 제15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6조 (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때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고령군 의회회의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7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령군 의회회의 조례와 고령군 의회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원 소개의견서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소개의원			주민등록번호
소개년월일			
소개의견			

의원명단

읍면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고흥읍	이경수	고흥읍 서문리 219-51	35-2789
도양읍	유탉근	도양읍 봉암리 2242	842-0009
풍양면	박동래	풍양면 당두리 350	32-4715
도덕면	신윤식	도덕면 가야리 206	843-0765
금산면	김남규	금산면 대흥리 581	843-8789
도화면	김동인	도화면 당오리 522	34-0204
포두면	류준상	포두면 상대리 1	32-5883
봉래면	고임준	봉래면 신금리 1086-1	32-0777
동일면	최형문	동일면 봉영리 241-1	33-7074
점암면	박채주	점암면 화계리 63	33-9400
영남면	김선규	영남면 금사리 732-18	32-8852
과역면	송복조	과역면 과역리 439-2	33-5001
남양면	박용호	남양면 대곡리 2137-4	33-5472
동강면	송기복	동강면 유둔리 198-1	33-2401
대서면	송용현	대서면 상남리 1107	33-3577
두원면	정영표	두원면 학곡리 55-6	35-4010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정소식지에 게재할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진 의정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군민 여러분의 진솔한 고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의정과 군정에 바라는 사항
- 지역발전에 대한 건의사항
- 기타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논단, 칼럼, 제언등

● 분 량 : 200자 원고지 5~8매

● 접수기간 : 수시

● 보 낼 곳 : 고흥군 의회사무과 (35-1228)

방 청 안 내

고흥군 의회에서는 여러분의 본회의장 방청을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방청을 환영합니다.

방청을 하시고 의정활동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방청권은 의회사무과(☎ 35-1228 군청 본관 4층)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본 “의정소식지”가 필요 하신분은 고흥군의회사무과 (전화 35-1227~8)로 연락주시면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